

# **은비 보고서**

**2017. 4.**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공동위원장**

: 국회의원 남인순, 김삼화, 금태섭

### **사무국**

: 이현숙 상임대표, 이정민 실장, 정희진 ((사)탁틴내일)

### **입양팀**

: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구슬기 비서관(남인순 의원실), 노혜련 교수(승설대)

### **학대팀**

: 김은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구슬기 비서관(남인순 의원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김영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최초록 변호사((사)두루)

### **법원팀**

: 김경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김수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김진곤 지도력개발국장 (한국 YMCA 전국연맹), 정다은 비서(금태섭 의원실).

### **친모팀**

: 목경화 회장(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창선 사무국장(뿌리의 집), 강정은 변호사((사)두루), 박영미 대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최형숙 대표(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오진희 정책보좌관(김삼화 의원실), 전영순 대표(한국한부모연합).

###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 지방자치단체(대구시청) 조사팀**

: 남인순 의원(국회의원), 이영희 상임대표((사)탁틴내일), 강정은 변호사((사)두루), 구슬기 비서관(남인순 의원실), 김영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최초록 변호사((사)두루)

### **참여단체**

(아동 및 입양 인권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뿌리의집, (사)탁틴내일,

한국 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미혼모단체)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법률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두루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 Contents

<b>I. 위원회 구성과 조사 진행</b>	1
1. 위원회 구성 과정	3
2. 조사 진행 과정	5
<b>II. 은비 이야기</b>	7
1. 출생, 어린 엄마와의 생활	9
2. 에델 보육원에서의 4개월	9
3. 성가정입양원 입소	10
4. 1차 입양전제위탁	10
5. 성가정입양원으로 귀원	14
6. 대구로 2차 예비입양	14
<b>III. 포천 아이 이야기</b>	19
1. 친부모와의 생활	21
2. 입양 절차와 과정	21
3. 학대, 사망 후 유기까지	22
4. 00이의 죽음으로	24
<b>IV. 현장 조사 결과</b>	25
1. 첫 번째 신고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대구남부경찰서를 중심으로	27
2. 두 번째 신고 :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수성경찰서를 중심으로	32
3. 성가정입양원	38
<b>V. 제도 개선 제안</b>	49
1.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2.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88
3.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	97

# 목 차

4. 친부모 양육지원 .....	107
<b>참고문헌</b> .....	<b>112</b>
<b>VI. 부록</b> .....	<b>116</b>
1. 위원회 발족 보도자료와 취지문 .....	118
2. 성명서 .....	125
3. 기자회견 .....	128



# I

## 위원회 구성과 조사 진행

1. 위원회 구성 과정

2. 조사 진행 과정



# I

## 위원회 구성과 조사 진행

### 1. 위원회 구성 과정

‘입양아동 학대 근절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16년 11월 22일 발족하였다.

대구로 입양체험을 간 은비가 7개월만인 2016년 7월 15일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 후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은비는, 2016년 10월 짧은 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해, 8월 말 아동상습학대혐의로 예비 양부모가 구속 송치된 일은 PD수첩을 통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포천에서는 입양아 00이가 입양특례법이 아닌 민법 적용을 받아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아이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후, 시신을 훼손하여 야산에 암매장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허위신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는 큰 문제가 되었다. 더불어 법원에서 예비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적 시스템 상에 입양아동 인권보장에 대한 관점이 부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두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더불어 현행 입양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울린 것이다. 그 동안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입양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마련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은비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2016년 10월 초였다.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박영미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최형숙 인트리대표, 탁틴내일 이영희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입양의 길을 선택한 아동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예방책은 없었는가, 제도를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가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은비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긴급하게 움직여야했다.

한편, 은비 양부모의 지인들은 ‘그들(양부모)이 대구의 유지이고 기준에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입양하여 잘 키웠기 때문에 학대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은비가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해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비 예비양모의 오빠가 가톨릭계의 높은 지위에 있어서인지 언론에서 보도를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온다더라.. 라는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피해자인 은비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학대와 폭력이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결국 이러한 정황을 살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상조사를 위해 아동복지 연구자, 법률전문가, 민간단체가 모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의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탤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을 타진했다. 이에 2014년 울산 서현이 사건 진상조사에 함께 했던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세 의원이 동참의사를 밝혀 공동위원장으로 맡기로 했다. 그리고 1차 공판 날짜에 맞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대구·포천 입양아동의 입양 의뢰부터 사망 발생 시까지 사건의 진상(미혼모 상담 및 지원/ 입양기관/ 법원의 심사/ 아동학대 개입)을 면밀히 밝히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민간 및 공적 지원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 사망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없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후, 입양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입양 절차 개선 및 미혼모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일구어 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했다.

그리하여 2016년 11월 22일, 「입양아동학대 근절과 입양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로 확대하여 총 30여개의 법조인 단체, 아동·여성 인권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과 국회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여단체명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국회의원 :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공동상임위원장 : (사)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국회의원 남인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뿌리의집,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두루, 사)탁틴내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재)동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방정환재단, (비)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대책위원회는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 아동학대 가해 양부모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 미혼모와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입양아동인권보장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취지의 「입양아동 학대 사망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2017년 4월 현재 서명인원 : 4800여명)하면서 관련기관에 대한 조사 및 재판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은비를 학대, 사망케 한 책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 2. 조사 진행 과정

대책위원회는 두 입양아동이 학대 ·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냈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기 위해 ①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 ②대면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진상조사위를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였다. 실무팀은 입양, 학대, 법원, 친모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누어 현장조사와 문제점, 개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했다. 각 분과에서 입양팀은 소라미 변호사, 학대팀은 세이브더칠드런 김은정 부장, 법원팀은 김경은 변호사, 친모팀은 최초록 변호사가 각각 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대책위원회 활동과 실무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탁틴내일에서 사무국을 담당했다.

10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법원 등에 서면질의를 진행, 11월 중순까지 수집한 서류와 서면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팀별 회의를 거쳐 대면조사 일정을 잡았다. 12월 16일 남인순 의원실과 함께 10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부경찰서, 경북대학교병원, 수서경찰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 대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학대의심신고를 한 경북대학교병원에는 담당 의료진(황00 교수/000법의학교수)이 재판에서 상세한 법의학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은비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밝혀주었기에 현장 대면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

2017년 1월 13일,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하여 현장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남인순 의원실 외 총 7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 중에 2017년 1월 11일 포천 00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각 무기 징역, 징역 25년,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아동학대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시행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이고,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하였다.

2월 8일 대구에서 1심 선고공판이 열렸고 법정은 피고 백\*\*에게 징역 10년과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

진상조사위는 3월 3일 모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일 워크숍을 열어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보호체계상의 허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종안을 논의하였으며, 곧 이어 3월 8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열어 조사위의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부처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상조사 결과의 집필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조사의 팀장을 맡은 단체들이, 정책개선방안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위원들이 분담하여 쓰고 전체 회람하였다.

# II

## 은비 이야기

1. 출생, 어린 엄마와의 생활
2. 에델 보육원에서의 4개월
3. 성가정입양원 입소
4. 1차 입양전제위탁
5. 성가정입양원으로 귀원
6. 대구로 2차 예비입양



# II

## 은비 이야기

은비의 출생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학대의 정황과 관련된 사실과 증언들을 정리하였다. 이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현장 조사서와 서비스 제공 일지 기록과 면담 내용, 그리고 조사팀이 은비가 머물렀던 입양원, 관계자, 은비의 친모, 대구경찰서 등에서 면담한 기록을 토대로 작성됐다.

### 1. 출생, 어린 엄마와의 생활

은비는 2012년 9월 27일, 전주에서 열일곱 살 미혼 엄마의 딸로 태어났다. 친부는 92년생으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는데 짧은 기간 은비를 함께 키웠다. 어린 엄마는 은비를 홀로 키우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홀로 생계를 꾸리는 중에도, 고졸 검정고시 준비를 하며 열심히 살았다. 1년 뒤, 엄마는 은비를 24시간 돌봐주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그러나 은비 엄마에게는 24시간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벅찼다. 은비가 17개월 되었을 무렵인 2014년 2월 28일, 어린 엄마는 은비를 경기도의 에델보육원(고아원)에 맡겼다.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 2. 에델보육원에서의 4개월

에델보육원 보육일지 속의 은비는 대체로 평범했다. 엄마와 떨어져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2살배기 아이의 불안과 슬픔을 감안하면, 무던하게 적응해내는 은비에게 기특함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외조모에게서 자란 엄마는 은비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 보다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하고 싶었다. 입양 보내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한다. 넉 달 후, 2014년 6월 27일 은비는 성가정입양원에 입양을 위해 입소한다.

### **3. 성가정 입양원 입소(2014. 6. 27. ~ 2015. 7. 24.) 1년 1개월**

성가정입양원에 입소 당시 은비는 11kg, 81.8cm으로 다른 또래아이들과 같이 건강했다. 아이는 걷고 뛰는 동작이 능숙하고, 미끄럼틀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고, 또래와 손을 잡고 어울려 놀았다. 언어발달의 정도는 의사표현이 확실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연결된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상에 따라 대화법을 다르게 구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이를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 할 수 있는 아이였다. 인지 발달 정도는 사물의 세부 이름을 인식하고, 그것의 관계를 이해하며, 사물간의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또 장난감의 모양이나 색깔을 알고 구분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4년 은비의 친부는 입양진행을 번복하였다가 대면 상담 후 입양에 재동의 했다고 한다. 성가정입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친부가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은비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입양을 설득했다고 한다.

### **4. 1차 입양전제위탁(2015. 7. 24. ~ 2015. 11. 27.) 4개월**

성가정입양원에서는 2015년 7월 24일, 은비를 경기도 동탄의 한 예비입양가정에 보냈다.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양매뉴얼에는 법원의 허가 후 아동을 입양가정에 인도하도록 절차가 마련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 매뉴얼대로 입양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전에 아동을 입양가정에 인도하고, 사후 법원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입양상담을 진행했던 정\*\* 상담원에 의하면 위탁가정에서 2살가량의 여자 아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했고, 연장아 입양의 어려움을 알렸으나, 친자인 두 남아와의 터울을 고려하며 강고한 입장을 내비추었다고 한다. 입양원에서는 연장아 입양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연장아 교육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연장아 입양부분에 관해서 미리 짐작하여 판단할 경우 양부모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보통은 개별상담을 통해서 입양이 진행 되고,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 입양원의 입장이다.

당시의 담당자는 ‘예비양부모는 연장아라고 강조해도 너무 좋고 예뻐서 팬찮다고만 했다. 결과적으로 양부모가 미성숙하고 심리적으로 적합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못했다.’고 고백한다.

한 달 후 상담사가 불시 위탁가정에 방문 했을 때, 위탁모는 은비가 식탐을 호소하였다고 하였

고, 9월 5일 위탁모와의 상담내용에는 ‘위탁모가 식사량 조절을 하니, 은비가 자꾸 위탁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몰래 먹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아동의 태도로 인해 마치 자신이 나쁜 엄마인 것 같아 화가 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훈육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강한 훈육(손바닥 체벌)을 당하고도 은비가 자신에게 집착하며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에서 혼란이 생기고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긴다.’는 위탁모의 고백이 있다. (은비를 담당했던 보육사는 ‘은비가 원래 식탐이 많은 것은 아니었고, 보통 아이들이 결연가정에 가면 식탐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니 욕구충족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가정에 들어가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22일의 가정방문 상담에서는, 양모가 오빠를 혼내면 옆에 와서 “이슬(당시 불렸던 이름)이는 안했지? 엄마, 난 안 그럴게요.”라고 이야기하고 거거나, 어쩌다 엄마가 한 번 잘했다고 칭찬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며 ‘엄마, 나 점프했어.’라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칭찬을 갈구한다고 하였다. 위탁모는 이러한 은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 아동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꾸 살펴보게 되면서 불편한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 달 뒤, 남 원장이 가정방문을 하고 상담하였는데 위탁모는 은비가 체중이 늘어 식사조절을 시키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과, 은비 양육을 위해 회사를 퇴사 하였는데 우울증이 생겼으며, 동시에 위탁부와 은비가 사이가 좋은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며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체벌 및 훈육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상담일지 내용을 보면 ‘아동은 상담원을 몹시 반기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옷장과 침대 등을 보여주며 “수녀님, 내방 좋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위탁모는 아동이 너무나 내향성이 강하고 자기표현을 하지 않으며, 대답을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점과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의견을 보이며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위탁모의 주된 지시의 내용은 거실 장식장 위의 장식품 등 만지지 말라는 물건 만지지 않기, 오빠의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어지르지 않기, 주방의 조리도구나 위험하다고 주의 준 물건 들 만지지 않기 등이었다. 상담원은 대부분의 아동이 부모가 지시나 주의를 준 것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가면서 인지발달, 위험에 대한 이해, 부모에 대한 신뢰 등이 생기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상담원은 양모가 몇 차례 아동이 지시사항을 어긴 경우 끊어 앉혀 두거나 엉덩이, 등을 때린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체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며, 아무리 훈육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정서적인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양모는 자신의 친자 2명을

키울 때도 그렇게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일단 체벌은 하지 않겠지만, 아동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훈육하는 것이 좋을지를 문의하였다. 상담원은 ‘좋은 습관들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부모교육 때 제시한 양육도서를 읽으며 추후 입양진행 상담원에게 수시로 상황별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한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사전교육과 양육훈련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상담과 지원이 부족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입양 체계의 한계점을 면밀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유아가 아닌 연장아<sup>1)</sup>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양육실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입양원의 담당자들은 입양실무 경험에 부족하고 직무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자신이 입양된다는 것을 알고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새로운 가족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까지 예상하기 힘든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친생부모와 분리된 채 살아야 하는 아이의 내면은 평생 치유되기 힘들 수도 있는 아픔으로 자리 잡는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 또래가 거쳐야 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성장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곁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기에, 세심하고 노력한 관심과 돌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성가정입양원은 연장아의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양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입양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무조건 입양이 최선인가?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참 쉽고 편리하게 판단하고 결정해 온 것이 아닐까?

예비양모는 자신이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입양을 하게 되면서 보다 더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퇴사를 했는데 아동이 자신의 뜻대로 빨리 가정에 적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보다 남편(양부)과 관계가 더 좋은 것 같았다고 한다. 또 남편도 퇴근하며 자신은 쳐다봐주지도 않고 입양한 아동만 예뻐한다면서 우울하고 기분이 늘 쳐지는 느낌이라고 호소하였다.

결국 10월 30일 위탁모가 은비의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 씻기 거부, 식탐, 훈육 시 대답을 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며 입양진행을 중단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힘들다는 것이다.

연락을 받고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하였는데 양부는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양모가 변화되어 은비와 잘 적응하기를 바라면서, 양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다소 감정적으로 아동을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요청하였다. 은비는 양모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보였으나, 오빠와 양부와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신체적으로 두드러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

1) 연장아란 일반적으로 2-3세 이후의 아동을 말한다.

이후 몇 차례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 성가정입양원에서는 은비의 기관복귀를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예비 양모의 심리적 상태에 비추어 더 이상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만 3세 여아의 발달 특성상 아동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예비 양모가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고, 성가정입양원에서는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상담을 진행과 동시에 예비 양모의 개별 심리 상담도 진행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은비에게 신변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귀원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은비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는 ‘입양원 상담자에게 은비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도한 식탐, 고집행동 등)을 보이긴 하지만 다루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며 귀원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결국 11월 27일 은비는 4개월 만에 성가정입양원으로 복귀하였다.

진상조사위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 중 1차 예비입양가정에서 은비가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었는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사후 조치를 했는가?, 언론에서 학대정황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대를 받은 정황 유무 및 판단 근거는 양모와의 상담 과정에서 손바닥을 때리거나, 아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대화를 하는 등 일상적인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훈육행위로 확인되었음.

2) 사후 조치 : 지속적으로 카톡과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올바른 훈육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상담 기관에 양모 개인 상담을 의뢰함.

3)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비 양모의 자발적 보고 외에 아동에게 직접적인 증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양모가 아동의 귀원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대 보고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있었음. 양모 보고에 근거한 학대의 심각성이 아동보호전문에 신고할 만한 수준의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학대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탐색을 시작함과 동시에 귀원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었음. 무엇보다도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모의 행위를 문제로 규정하고 신고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상담과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양모의 변화를 이끌고 아동의 가정에서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

## 5. 성가정입양원으로 귀원(2015. 11. 27. ~ 2015. 12. 19.)

침울한 얼굴로 상담사를 따라 돌아온 은비는 3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 엄마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오빠랑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불리던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친부모와의 이별에 이어 또 다시 상처받은 은비의 입양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은비가 1차 예비입양과정에서 입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상태(신체적, 정신적)와, 병원 진료나 심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시설로 왔을 때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벼운 명과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만 아동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수준이었으므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음. 다만 본원으로 돌아온 날 저녁 심하게 울면서 아가방에 바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당 아동 또한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다시 원으로 돌아오게 되어 속도 많이 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잘 돌봐주었음. 그리고 사랑해주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해당 아동은 그제야 눈물을 닦고 아가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음.

당시 해당 아동에게 경미한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으나 치료 혹은 상담을 요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종종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집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 생활에 무난하게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음.’

입양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나 원장 대면조사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빨리, 아이를 다시 입양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다. 즉 새로운 양부모를 찾아서 좋은 가정을 만나게 되면 은비는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그리고 다시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미비하고 입양 프로그램도 부재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

## 6. 대구로 2차 예비입양

은비가 입양원으로 돌아와서 지낸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은비를 담당했던 보육 사의 말에 의하면 별다른 부적응의 모습 없이 쾌활했다고 한다. 보육사는 은비가 왜 되돌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보통 입양원에서는 한 명의 보육사가 열 두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여유롭게 관찰하거나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은비가 입양원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할 무렵.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양원에서는 2차 입양전제위탁을 보냈다. 당시 보육 담당자들은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은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신생아가 아닌 연장아이며, 말도 할 줄 알고 나름의 자아형성이 되어있는 시기인데, 은비가 가정에 가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오직 입양원 원장의 의중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1차 가정에서 학대의심이 들어왔으

면 그 자리에서 분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은비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입양환경이 바뀌게 되어 심리적으로 혼란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한 배려도, 이해도 없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좋은 새 부모님에게 잘 적응하기만 하면 돼~’하고 혹시 인형놀이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보통 입양원에서 파양되거나 다시 입양절차를 밟을 때는 사례회의나 자문단 회의를 통해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성가정입양원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원장은 개인적인 자문을 받아 2차 입양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은비의 친부모들은 이러한 사실(1차 예비입양과 되돌아옴. 다시 2차 예비입양)을 전혀 모르다가 뇌사로 병원에 실려 온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은비를 볼 수 있었다. 친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2015년 5월 경, 은비가 1차 입양 가정에 가기 전 면회를 한 날이었다.

2015년 12월 19일 은비는 입양원에 온 지 6개월 된 1살배기 남아와 함께 대구로 2차 가정체험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후인 12월 21일, 예비양부모는 입양원으로 전화해 은비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이가 씻기를 싫어하고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원장은 가정방문 상담과 교육을 했다. 원장은 예비양부모를 상대로 은비의 과도한 불안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과 아동과 양부모간 적응을 위한 긴급중재를 했으며 입양진행 의사를 재확인 했다.

16년 4월 4일, 은비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저나트륨혈증이었다. 은비의 체구 대비 1.5리터의 물을 강제로 먹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참혹한 증상이었다. 온 몸에는 멍과 화상자국이 있었고, 눈의 각막에서는 화학적 손상이 발견되었다.

담당 의사는 대구남부경찰서에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서로 돌아갔다. 경찰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아닌,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가 하는 개인적인 발언(예비 양부모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아이가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해로 인한 것이다 등)을 듣고 오인 신고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가 담당의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학대신고 출동 시 정해진 매뉴얼대로 학대위원장을 만나지도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청소년과 담당의사를 만나지 않고 철수해버렸다. 무엇보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은비를 그냥 눈으로만 보았다고 한다.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옷을 들쳐보기만 했다면 아이의 몸에 생긴 멍자국들을 보았을 텐데도... 경찰이 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병원 측에서도 사건에 대해 손을 놓았다. 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모 의사는 ‘그동안 경험에 비롯하여 (아동학대로)신고를 하면, 아이는 안전해지기는 하지만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또한, 학대 받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려면 관심과 돌봄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입양과정에 방해가 될까봐 학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사실을 들추면 가해자에게 입양되지 못할까봐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일까? 우리 사회가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 은비는 수액을 맞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다. 다시 석 달이 지난 7월 15일, 이번에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실려 왔다. 심정지 상태였다. 의료진의 노력으로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자가 호흡을 회복하진 못했다. 의료진은 뇌손상을 비롯하여 외부적인 폭력이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한 다양한 아동학대의 증상들을 확인했다. 심정지, 온몸의 명과 화상자국, 각막 유리체의 출혈과 망막 박리, 발바닥 근육 내의 출혈에 따른 멍 자국 등 들이었다. 소아과 황00 교수는 후두부출혈과 뇌사상태 등 신체적 학대 흔적과 양부의 유난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의심되어 대구 수성경찰서에 학대를 신고했다.

양부는 진술녹화에서 당시 은비가 뒤로 넘어져서 의식을 차리지 못 해 응급실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모는 은비가 자해하고 머리를 박는 등 문제행동을 하였으며, 화상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몬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데인 것과 토스트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손을 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했던 1차 응급실행에 대해서는 은비가 항생제를 먹어서 이를 희석시키고자 200ml 3컵(총 600ml)을 먹였는데, 양부가 또 500ml 3잔(1.5 L)을 먹여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비 몸의 명자국은 몽고반점이 다른 애보다 커서 그런 것이지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 편, 은비가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동학대혐의자인 2차 예비 입양부모에게 은비의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성가정입양원은 1, 2차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왜 법원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원장은 일단 경황이 없었고, 법원에 보고해야하는 사항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은비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은비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었던 원장은 오히려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부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양부모의 편에 섰다.

2016년 8월 31일 양부 구속, 양모는 불구속으로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양부 백00은 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양모 김00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방임 혐의였다. 공판이 열린 뒤 일주일만인 10월 29일(토) 오전 은비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 후, 31일 부검실시 결과 "사인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보이며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학대로 의심 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2017년 2월 8일. 1심 형사 재판부는 양부에게 아동학대상해치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방임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 2017년 4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결과, 판결문을 참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 백00은 각각 3세, 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피해자 은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김00은 전신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은 피해자 은비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방임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은비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양육자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결국 사망하였고, 피해자 000은 현재까지도 학대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해왔고, 피해자들도 당초에는 최선을 다 해 돌볼 생각으로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여럿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1) 입양을 권하는 사회 : 친모는 기르고 싶었으나 입양이 아이를 위해 더 좋다는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2) 전문성이 결여된 입양기관 :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입양을 주관하고 이에 대한 공적인 개입과 모니터링은 부재하다. 입양에 대한 전문성과 아동인권 최우선의 관점이 결여된 기관장과 종사자가 주도하는 입양 관행은 입양 아동에게도 입양부모에게도 위험하다.
- 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의사의 업무방해 : 병원의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이 있고 공식 매뉴얼이 있는데도 사적으로 개입하여 공권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대구 남부경찰서의 직무유기 :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의 사적 개입을 근거로 업무상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건 종결 처리함으로서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하도록 돋는 결과를 가져왔다. 덕분에 참혹한 학대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III

# 포천 아이 이야기

1. 친부모와의 생활
2. 입양 절차와 과정
3. 학대, 사망 후 유기까지
4. 00이의 죽음으로



# III

## 포천 아이 이야기

### 1. 친부모와의 생활

00의 친모는 둘째를 임신하고 난 후 친부의 잣은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함 등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2010년경 이혼을 하게 되었다. 친모는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 자녀를 키우기 힘이 들었지만 친부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으며 양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는 한부모 가정 국가지원을 알아보고 전세임대를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으나 500만원의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고 두 자녀와 함께 직장에 딸려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2014년 9월경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 할 당시 알게 된 양모가 양육을 많이 도와주게 되었고 친모로부터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양모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니 자신에게 입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다.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을 하던 친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빠가 있는 가정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자신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적고 자녀들의 양육을 도와준 양모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 2. 입양 절차와 과정

친부모 모두 양부모에게 입양을 모내는 것에 동의를 하여 2014년 3월 24일 양모가 입양을 신청 한 후 2014년 5월 29일 법원의 조사 명령을 통하여 가사조사관이 양부모에 대한 면접조사 및 가정 출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통하여 아이와 청구인들에게 애착형성을 하고 있고 부부관계가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입양 절차 과정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 전 사전 상담, 양부모에 대한 입양 전 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의 절차는 부재했다. 민법 상 입양 절차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3. 학대, 사망 후 유기까지

양부모는 2014년 9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00의 입양허가를 받아 2014년 10월 10일 입양신고를 하였다. 양부모는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양부의 급여 약 20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거나 사치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경제적인 상황은 힘들어 졌다. 양부모는 2016년 5월 31일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다. 양모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우울함 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이가 식탐이 많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학대하기 시작했다. 양부는 양모가 입양을 원하여 입양한 것 이어서 00에게 별다른 애정이나 책임감이 없었으며 양육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00가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2006년 3월부터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는 집을 제외하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임△△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부모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임△△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면서 지내게 되었다.

2016년 6월경부터는 양부모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몰래 음식을 먹은 다음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파리채로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있게 하고 00이를 안방이나 화장실에 가두어 놓고 수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로도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학대의 강도를 높여갔으며 임△△은 학대가 시작되기 전 후로 00이 몰래 음식을 먹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학대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2016년 8월 27일 거주지에 00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 다리, 몸 등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작은 방 베란다에 눕혀 놓고 음식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베란다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였다. 2016년 8월부터 외출을 하거나 잠을 잘 때마다 묶거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짧게는 수 시간 길게는 수십 시간 방치를 하였고 00이는 날이 갈수록 마르고 지쳐가는 등 건강이 악화 되었다. 2016년 9월 13일 명절 연휴에 움직이지 못하게 팔, 다리, 몸 등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작은 방 베란다에 눕혀 놓고 음식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베란다 문을 잠그고 55시간동안 00이를 방치하였다. 이후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야위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죽어가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로 2016년 9월 28일 00이는 사망을 하였다.

양부모는 00이 사망하자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은폐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체를 포천시 약수터 입구 공터에서 화장하기로 공모를 하고 2016년 9월 30일 사체를 대형 수건으로 감싸고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토치 등으로 불을 붙인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후 사람들이 많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하여 실종신고를 하였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11일 양모에게 무기징역과 양부에게는 징역25년 동거인 임△△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결과, 판결문을 참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태어난 지 여섯 해가 조금 지난 아동으로,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보호아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마땅한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 동안 최소 17회 이상 물 한 모금도 임에 대지 못 한 채 투명테이프로 온몸이 끓여 5시간에서 55시간 동안 작은방 베란다에 갇히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했다.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가족이라고 믿었던 피고인들로부터 차라리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면서 피해자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너무도 오랜 시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들은 키 92cm, 몸무게 15kg에 불과한 어린 아이이자 가족이었던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꼼찍한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주도연밀하게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적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내다 버리고 사체 유기 장소를 2회에 걸쳐 사전 답사하였으며 자동차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3시간동안 전소 시킨 다음 남은 유골은 부수어 깨트려 유전자 감정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사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체를 손괴할 때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불태우고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휴대폰에 남아있던 각 데이터도 삭제한 다음 일부러 사람이 많은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위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유족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자의 친모는 지인에게 입양되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만 믿었던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학대 끝에 사망해 그 시신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인하여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 역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분(公憤)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개 문제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법원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 것도 아니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아동학대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 시행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告白)이자 최소한의 예의이고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闡明)하는 것이다.

## 4. 00이의 죽음으로

### 1) 양육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양육자 혼자 떠맡아야 하는가?

친모가 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받기위해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정보도 부족 했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양육은 오로지 양육자의 몫으로 남았다.

### 2) 한부모가족 지원의 한계

친정을 비롯해 주거지를 떠돌다 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서 두 자녀와 가난과 편견과 모든 삶을 떠안아야 하는 이 엄마의 선택은 ‘입양’이라는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 3) 아동인권에 위해한 민법상 입양

입양과정에서 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재했고, 양부모 자격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입양 후 아동의 적응 및 발달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의 심리상태 등 검사결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친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친모는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알 수도 없었다. 아이는 누구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로부터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죽어가야 했다.

# IV

## 현장 조사 결과

1. 첫 번째 신고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대구남부경찰서를 중심으로
2. 두 번째 신고 :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수성경찰서를 중심으로
3. 성가정입양원



# IV

## 현장 조사 결과

### 1. 첫 번째 신고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대구남부경찰서를 중심으로

2016년 4월 4일 저녁 은비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은비의 상태를 본 담당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하였고 기존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학대위원회에 학대 의심여부를 알렸다.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은비에게 가해진 아동학대는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은비는 학대 받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왜 은비를 구해내지 못한 것일까?

#### 가. 학대위원회를 활용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은비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때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상태였다. 당시 진료의뢰서에 따르면 경련과 함께 의식 저하가 있었다.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은비는 의식을 명료하게 회복했고, 신체활력 징후가 정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신에 색깔이 다르게 맹이 관찰되었고, 손가락과 복부에 상처가 있고 각막에 손상이 있었다. 나트륨 수치도 115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다. 나트륨 수치는 135~145 정도가 정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급성 저나트륨 후유증에 의한 경련으로 보고 전해질을 보정해주는 치료를 진행하였다. 다음 날 낮 12시 경 담당 의사가 학대환자 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위원회에서 총무과를 통해 2시 50분 경 대구남부경찰서 대명파출소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다. 최초 내원했었던 대구 한의 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없었다. 모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학대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의무위반이 발견되었을 때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경찰 출동

4월 5일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대명파출소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신고 내용을 전한다. 하지만 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따로 신고접수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서 정확한 신고 시각을 알 수 없었고, 뒤늦게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보려고 하였지만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받지 않아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한 경우이든, 파출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특정 기관에서 신고를 전달한 경우이든 간에 경찰서가 신고 사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록을 해야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아동학대 신고는 시각과 경위가 제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후 대구남부경찰서는 신고접수를 통보하기 위해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녹취되지 않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통화 시간이 각 33초, 114초, 42초로 1~2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그쳤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를 제대로 통보 했다고 보기 어렵다.

### 개선 필요사항

- 아동학대 신고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신고가 전달되든지 간에 일시, 신고자, 경위, 학대의 심자, 피학대아동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특정 기간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 전수를 조사하여 각 기관별 상호 통보와 처리 프로세스에서 누락되는 건이 없는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이 결과를 반영해 신고접수 절차를 체계화 시켜야 한다.
- 공동업무 수행지침에 따르면 경찰로 아동학대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오인·허위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인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신고접수 통보가 되지 않거나 늦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 통보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및 학대전담 경찰관은 즉시 병원에 출동하였다.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출동을 하고보니 이미 대명 파출소에서도 출동을 한 경찰관이 있어서 출동한 경찰관 인원은 모두 합하여 10여 명에 달하였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은비가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한꺼번에 병실에 몰려가는 것이 맞지 않아 은비의 상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신고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참조). 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대구남부경찰서와 대명파출소의 인력이 모두 출동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 인력만 10여 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 판단은 아무도 내리지 못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 현장 출동할 주체와 인원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누가 출동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인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주체가 협력하여 아동학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다. 현장조사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학대환자 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병원 사회복지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경찰이 방문할 당시 위탁모와 병실에서 면담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이 도착하자 사회복지사는 빈 병실에서 경찰에게 위탁모가 들려준 일방적인 이야기를 다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 주치의가 아니었던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가 찾아왔다.

피해아동 및 부모를 잘 알고 있다는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는 경찰에게 양부모가 학대를 할 사람이 아니며, “아동은 입양 이전부터 자해 증상이 있었고, 신체에 있는 명은 자해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는 사회복지사를 압박하여 오인신고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경찰관,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다 같이 병실에 들어갔다. 경찰관은 은비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옷을 들춰보거나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고, 따로 사진을 찍지도 않았다. 육안으로만 짐들어 있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모두 병실에서 나왔다. 당시 경찰관들은 명이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대구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오인신고라고 판단하였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

대구남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한 근거가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의 주장이었고, 그 외에는 달리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의사의 권위에 근거하여 다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담당 주치의를 만나지도 않았다. 학대환자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것도 아니었다.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므로[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관은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할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신고철회 및 취하 등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공동업무 수행지침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경찰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현장 종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아무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 개선 필요사항

- 경찰 단독으로 현장 출동한 경우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수사매뉴얼이나 수행지침 상 조사대상자 신분 확인 같은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 심각한 아동상해와 같은 중대 학대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아동안전을 중심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신고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주치의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 라. 경찰의 사건 종료 후 병원의 역할

경찰의 조사가 종료된 후 병원 담당의사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경찰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병원이 오인신고를 했다고 봤고, 병원은 경찰이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병원 측에서는 외래치료 일정을 잡아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담당 의사가 MRI 및 빨달검사 외래일정을 잡았음에도 양부모는 진료를 받으려 오지 않았다. 은비는 2016년 4월 7일 퇴원하여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갔다.

### 개선 필요사항

- 학대 의심 아동이 퇴원한 경우에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심이 들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민감성 증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외래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적 방임이 의심될 경우 지역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소에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추적 관찰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학대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등 학대 소견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거나 충분한 학대 판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

구를 두어야 한다.

## 2. 두 번째 신고: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수성경찰서를 중심으로

### 가. 사건 접수

2016년 7월 15일 경북대학병원 황00 교수는 심정지로 응급실에 온 은비가 온몸에 상처와 화상 자국, 빨바닥에 심한 명 자국이 난 것을 보고 명백한 학대를 의심하여 대구수성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즉시 출동을 하며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를 통보했다. 사건 신고와 접수, 통보 절차가 잘 이루어졌다.

### 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 조사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는 은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은비와 동생 근호, 나아가 다른 입양 자녀들에 대한 학대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현장 출동 이후에도 병원, 사건 발생 아파트 등의 현장 조사를 비롯하여 입양 부모, 병원 관계자, 119 구급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성가정입양원 입양 자료를 확보하고 1차 입양모, 친모를 만나는 등 은비의 입양 과정을 포함한 학대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구수성경찰서의 동행요청을 받고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양모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하였다. 아이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하지만 반드시 확보 했어야 할 아동의 상흔 사진과 주치의 의견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경찰 수사팀은 아동 상흔 사진과 주치의 상담 내용을 공유해주기로 했으나 수사 기록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유 해주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흔 사진과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 개선 필요사항

- 학대 피해 아동의 상흔 확인과 증거 수집은 현장출동 당일 되지 않으면 추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서에 필수 정보로 포함되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경찰 측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역할이 다르다고만 생각할 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떻게 협업해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학대행위자 가정에 가기 전 학대 혐의자인 양부와 담당 수녀를 각각 면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대발생 과정에 대한 의견과 가정상황, 아동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성경찰서 수사팀과 함께 양모의 집으로 이동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이 먼저 방문하여 집안을 둘러보고 아동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집안의 위생상태와 가정환경이 양호하였고, 다른 아동들에게서 특별한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 주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은비와 함께 입양된 막내 000의 이마와 턱에 긁히거나 맞은 듯한 상흔과 눈에 50원 동전 크기의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현장조사 진술에 의거해서 아동학대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자 종합소견을 내었다. 또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혐의를 판단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에 남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학대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신고 접수 6일이 지난 21일 친모와 유선상담을 진행한 것이 전부이다. 대구수성경찰서에서도 아이들이 양모와 친밀도가 높아 보였고, 양부모가 학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며, 입양 부모에 대한 주변 평판이 좋았고, 아이들 양육 상태도 좋아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 개선 필요사항

- 학대피해아동 외에 혐의자 가정에 남아 있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동행 수사 과정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즉시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 상향과 제도 간소화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 경찰에게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현행법 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리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참조]. 대구수성경찰서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아동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조치 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할 수 있느냐는 점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친권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 다.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대구수성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7월 15일이고,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된 것은 7월 22일, 양부가 구속된 것은 8월 31일이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수사 개시 사실이 법원에 알려졌다면 법원에서는 입양 허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높다. 그러나 대구수성경찰서는 법적으로 통보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로 법원에 수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건을 처음 접수한 7월 15일 학대행위의심자 양부 백씨 조사 과정에서 은비가 입양절차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은비는 결국 뇌사 상태에서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사망한 후

에도 여전히 양부모의 자녀로 남아있다. 친모는 파양을 원하고 있지만 이미 은비가 사망한 이상 파양을 할 방법이 없다.

### 개선 필요사항

-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양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 혹은 검찰이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① 입양허가 신청서 ② 신청관련사항목록 ③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④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⑤ 입양대상아동확인서 ⑥ 양친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⑦ 양 친가정조사서 ⑧ 양친 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⑨ 입양동의서 등이 있다[입양특례법 제 11조 제1항 참조]. 양친이 될 자는 아동학대 경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것인데, 입양을 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은 이보다 더 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양친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에 준하여 ‘아 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사실’ 역시 법원에 통보되어야 한다.
- 입양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원에 의무적 으로 통보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상조사위 현장조사 당시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 결과 7월 15일 최초 현장조사 이후 8월 8일 2차 조사를 진행할 때 까지 7 월 21일 한 차례 유선상담을 진행한 것이 전부이다. 2차 조사 또한 아동 진술녹화를 위해 대구수 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한 아동에 대해 신체상태 확인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구 두로 확인하고 진술녹화에 참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도 경찰에서 기관에 협조요청 을 하였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다. 2차 조사 결과 조사자 종합소견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하고 있고 수사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아서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남기었다.

또한 8월 22일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에 따라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담임교사를 유선상 담 진행하였다. 또한 22일 대구수성경찰서로부터 한 차례 더 진술녹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진술녹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소 변경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 진술녹화가 진행되었다는 사항을 경찰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8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수성경찰서 수사팀 2명과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사례회의는 경찰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게 된 사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동 관련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주었다. 같은 달 29일 또 한 차례 자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다. 2차 사례회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 진행사항을 확인한 것과 더불어 추적60분 방송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인터뷰 요청 차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달해 받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열렸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였고, 양모와 유선상담을 하여 가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이 날 해당 경찰서 사건담당으로부터 아동의 양부가 구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공판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유보하였다.

8월 30일 지난 2차 사례회의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은비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지내고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모와 가정상태를 확인하였고, 형제인 두 아동을 짧게 인터뷰하였다.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과 혐의자, 가족과 더불어 아동이 다니는 교육기관이나 이밖에 아동이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 시설에 대한 아동 출석과 태도, 상태에 대한 체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 아동이 뇌사 상태에 빠질 정도의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업무 조정하는 등 다른 여타 업무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마. 아동학대 혐의 판단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9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검사가 기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양부모 측이 무고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재판결과를 통해 아동학대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가

정에 다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소견을 남겼다. 하지만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다.

이후 10월 5일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조치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10월 29일 오전 10시 42분경 안타깝게도 은비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3일이 지난 11월 1일 아동 사망 소식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하려고 한 가정방문 계획을 취소하였다. 11월 4일 사건처리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사건문의를 한 것으로 사례 개입은 종료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개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현장조사에서 밝혔다. 첫째, 피해 아동이 병원에 놔사 상태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수사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셋째,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어 경찰에서 조사 받고 난 참고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맞닥뜨리게 되는 거부감이 크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부족으로 인해 한 상담원이 오랜 기간 하나의 사건을 깊이 있게 개입하기 어렵다고 조사과정에서 말했다.

### 개선 필요사항

- 학대 혐의자 구속이나 재판진행여부, 피해자 사망 등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에 유기적으로 공유되거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상담원들의 입양아동 학대사건 민감성 증진을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입양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제작 배포해야 한다.
- 경찰 조사를 마친 참고인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청취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적절한 수준에 대한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3. 성가정입양원

은비는 2014. 6. 28. 친모의 의뢰로 성가정입양원에 입소했다. 당시 은비는 19개월이었다. 입소 당시 은비는 11kg, 81.8cm로 스스로 걷고 능숙하게 뛸 수 있었고, 의사표현이 확실하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은비는 입양 의뢰된 2014. 6. 28. 부터 1차 입양전제 위탁 보내진 2015. 7. 24.까지 약 13개월간, 1차 위탁 가정에서 귀원 조치되어 돌아온 2015. 11. 27.부터 2015. 12. 19.까지 23일간 성가정입양원에서 지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16. 11.경 성가정입양원을 상대로 자료 요구와 서면 질의를 진행했다. 서면 답변과 자료를 토대로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1. 13.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해서 보건복지부 및 성북구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관장과 집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동시에 은비의 보육과 입양 상담을 진행했던 종사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은비의 보육과 입양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성가정입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은비에게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가. 아동 위해가 우려되는 입양전제 위탁 관행

은비는 두 차례에 걸쳐 입양을 전제로 가정 위탁 보내졌다. 첫 번째 입양전제 위탁(1차 위탁)은 2015. 7. 24.에 시작해 2015. 11. 27.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두 번째 입양전제 위탁(2차 위탁)은 2015. 12. 19.에 개시되었다. 2016. 4. 4.에 1차 아동학대의심신고가, 2016. 7. 15.경 2차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있었다. 은비는 2016. 7. 15. 2차 신고 당시 응급실행 직후 뇌사상태에 빠졌고, 2016. 10. 29. 사망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 은비의 경우 2016. 7. 22. 서울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은비는 그 전에 이미 입양을 전제로 1차 가정에 위탁되었다가 귀원조치된 바 있고, 다시 2차 예비 입양가정으로 위탁 보내진 상태였다.

2011년에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원의 허가 절차가 입양 절차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입양이 완료되게 되었다. 입양허가심판은 비송사건으로 일반 재판보다 간이하게 진행되기는 하나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후 허가 결정 까지는 3~6개월가량이 소요되었다. 예전에 비해 입양 절차가 길어지면서 입양 기관 사이에서 ‘입양 전제 위탁’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은비 사건을 통해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입양을 전제로 한 위탁은 입양특례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실무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이 권장했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발행한 ‘2016 입양 실무 매뉴얼’에서도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입양전제 위탁 관행은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을 잠탈한다. 동 규정의 취지는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적절한 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 아동을 인도하자는 것이다.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현행 입양전제 위탁 관행 하에서는 입양기관장 단독의 결정으로 예비 입양 가정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공적 개입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동이 예비 입양 가정으로 인도된다. 현행 입양전제 위탁 관행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 모든 입양기관을 상대로 입양 전제 위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결정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할 수 있는 내·외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위탁 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는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그 내용이 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 입양전제 위탁이 현행과 같이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일임되어서는 안되며, 아동복지 법 지원 체계 내에서 철저히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입양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입양 관련 법령 및 입양실무매뉴얼을 개선·정비하여 입양전제 위탁의 심사 주체 및 절차와 요건, 아동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법원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형식적인 입양 교육의 한계

예비 양부모의 교육에 대하여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에 대하여 “1. 입양과 파양의 요건 · 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중앙입양원이 발간한 2016년 입양실무매뉴얼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은비 사건에서 1차 예비 양부모는 2015. 6. 13. 09:30~18:30, 8시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은 부모 교육을 받았다. 교

육의 내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과 입양 실무 매뉴얼이 제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 (시간)	강사명 <sup>2)</sup>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의 효과	시청각자료 강의	2015.6.13 (1.0)	박○○ 임상심리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경험 나누기 - 자녀양육방법(애착증진)	사례발표 강의	2015.6.13 (2.0)	이○○ 입양모 이○○ 입양모 장○○ 심리학박사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인 사례 나누기 - 아동심리 및 정서 - 입양부모준비	사례발표 강의	2015.6.13 (2.0)	김○○ 노○○ 남○○ 원장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후서비스 & 입양가정 에 대한 지원 - 입양가족모임소개	강의 시청각자료	2015.6.13 (1.0)	박○○ 사회복지사 송○○ 사회복지사
기타	-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강의	2015.6.13 (0.6)	송○○ 사회복지사 남○○ 원장 박○○ 입양상담부장
	- 입양관련 영상물 시청	시청각자료	(0.4)	
	- 소그룹활동, Q&A	토의	(1.0)	

2차 예비 양부모는 2015. 12. 5. 하루 동안 8시간에 걸쳐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은 1차 부모 때와 대동소이하다. ‘연장아입양준비’라는 주제의 교육이 2015. 12. 19. 원장수녀에 의해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2015. 12. 19.은 2차 부모가 은비를 처음 선보고 집으로 데리고 간 날과 동일한 날이다. 교육의 시기와 시간, 원장 수녀가 강의를 맡았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장아 입양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 (시간)	강사명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의 효과	시청각자료 강의	2015.12.5 (1.0)	박○○ 사회복지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경험 나누기 - 자녀양육방법(입양가족 주기 및 부모준비)	사례발표 강의	2015.12.5 (2.0)	이○○ 입양모 이○○ 입양모 남○○ 원장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인 사례 나누기 - 아동심리 및 정서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사례발표 강의	2015.12.5 (2.0)	김○○ (입양인) 노○○ (입양인) 남○○ 원장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후서비스 & 입양가정 에 대한 지원	강의 시청각자료	2015.12.5 (1.0)	박○○ 사회복지사

2)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추후 삭제 필요

	- 입양가족모임소개			
기타	-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강의	2015.12.5 (0.6)	송○○ 사회복지사 남○○ 원장 박○○ 입양상담부장
	- 입양관련 영상물 시청	시청각자료	(0.4)	
	- 소그룹활동, Q&A	토의	(1.0)	
연장아입양준비	-연장입양아동의 발달특성	부부상담 및 교육	2015.12.19	남○○ 원장

과연 하루 동안 8시간 몰아서 실시되는 강의식 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 부모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입양을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은비와 같은 연장아 입양의 경우에는 만 1세 미만인 신생아아동 입양과 비교했을 때 더욱 철저한 부모 교육과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은비와 근호 2명이 동시에 2차 가정에 입양 전제 위탁되었으며, 연장아 입양에 대한 특화된 실질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 개선 필요사항

- 현재와 같이 하루 동안 8시간 만에 강좌 참여만 하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 형식적인 입양부모 교육은 전면 재편해야한다. 입양부모가 아동의 출신과 입양 경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입양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미혼모, 입양아동, 연장아동 입양 부모 등)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하고 집단상담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특히 연장아 입양, 장애아 입양의 경우 더욱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 만큼, 기본교육과 별도의 심화된 상담 형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 현재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입양교육 당사자의 자격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나아가 동일한 기관에서 입양부모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모두 맡아 진행하면 제대로 된 검증과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양교육의 담당 주체를 입양 실무를 진행하는 입양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다. 내·외부 검증시스템이 부재한 결연·위탁 결정

1차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양전제 가정 위탁 형식으로 은비를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총 4개월 20여일 정도가 걸렸다. 선보기 후 결연의사 확인, 면회, 가정체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입양전제 위탁이 결정되었다.

- ① 2015. 3. 2. 기관을 방문하여 입양신청서 및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A 사회복지사)
- ② 2015. 4. 10. 기관 방문하여 서류 상담 및 심층 상담 (B부장수녀)
- ③ 2015. 6. 13. 입양 전 부모교육(8시간) 참석
- ④ 2015. 6. 22. 가정 방문 면담 (C 입양 상담원)
- ⑤ 2015. 6. 27. 기관 방문하여 은비 선보기 진행 및 결연 의사 확인 (D 원장 수녀)
- ⑥ 2015. 7. 5. 기관방문하여 은비 면회 진행 (D 원장수녀)
- ⑦ 2015. 7. 11. ~ 2015. 7. 12. 가정체험 진행 (B부장수녀)
- ⑧ 2015. 7. 18. 기관 방문하여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 관찰 및 평가, 양육코칭 후 아동과 외출 진행 (C 입양 상담원)
- ⑨ 2015. 7. 24. 입양 전제 위탁 개시

반면 2차 예비 입양 부모가 은비를 집으로 데려간 절차는 더욱 간이했다. 2차 부모가 입양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입양 전제 가정 위탁이 개시되기까지 걸린 총 소요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아동 선뵈기와 결연의사 확인, 가정체험의 개시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 별도의 면회나 가정 체험은 없었고, 각 단계별 평가와 사정도 부재했다. 입양신청부터 입양전제위탁 개시까지 총 1개월 1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가정방문을 시행한 것은 2015. 12. 15.이었고 그 결과로서 양친가정 조사서가 발급된 것은 2015. 12. 25.이었으나, 2차 가정에서 가정 체험이 시작된 것은 그 전인 2015. 12. 19.이었다. 양친조사서가 발급되기 전에 가정체험이 우선 실시된 것이다. 또한 2015. 12. 25.은 2차 예비 양부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원장 수녀가 긴급중재로 개입한 날인데, 양육 상황이나 아동의 복리 상대에 대해 후속적인 평가 조치 없이 같은 날 입양전제위탁으로 전환했다.

- ① 2015. 11. 15. 기관 방문하여 입양신청서 및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ㄱ 입양상담원)
- ② 2015. 12. 5. 입양 전 부모교육(8시간) 참석
- ③ 2015. 12. 5. 기관 방문하여 상담 (D 원장 수녀)
- ④ 2015. 12. 15. 가정방문 상담 (ㄴ 사회복지사)
- ⑤ 2015. 12. 19. 기관 방문하여 은비 선뵈기 및 결연의사 확인, 가정 체험 시작 (D 원장수녀)
- ⑥ 2015. 12. 25.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긴급중재 실시 (D 원장 수녀)

- ⑦ 2015. 12. 25.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D 원장 수녀)
- ⑥ 2015. 12. 25. 입양전제위탁으로 전환 (D 원장 수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양전제 가정위탁 절차를 살펴보면, 각 입양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단계별로 개입하는 종사자가 매번 다른 경우가 많다. 성가정입양원은 보육교사와 입양상담원으로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보육교사는 아동의 보육만을 전담하고 있었고, 입양 절차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입양상담 업무는 다시 초기 아동 인테이크 상담(친모 상대)과 예비양부모를 상대하는 입양 상담 업무로 분리되어 있었다. 입양 상담 절차에 있어서는 입양상담원은 일반적인 서류 절차와 가정방문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예비 양부모의 기관 내방 상담, 아동 선뵈기 및 결연 절차는 원장수녀나 부장수녀가 진행하고 있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아동 입양 절차에 5~6명의 상담원이 관여하고 있는 실태는 입양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아동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상태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로는 입양 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예비 양부모와의 상담 및 결연 절차에 기관장을 포함해 총 3~4명의 상담원이 관여하는 점, 아동 선뵈기 및 결연 · 가정체험 · 가정위탁으로 의 전환과 같은 입양 절차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원장 수녀 개인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러 명의 기관종사자가 하나의 케이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태는 성가정입양원에 입양 업무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성가정입양원 내 전체 사례회의는 월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사례회의에서는 기관에서 보호 중인 모든 아동에 대한 상황이 보고되고 공유되었다고 했다. 아동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회의는 부재했다. 원장 수녀가 입양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다. 별도의 자문회의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원장 수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집단적인 검토나, 자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 개선 필요사항

-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와의 결연이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부에는 심사위원회를, 외부에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결연에 대한 검증과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결연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100% 일임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예비입양부모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적 주체가 결연을 결정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

## 라. 기관장 및 기관 종사자의 비전문성

성가정입양원에서 원장수녀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조사 당시 기관 종사자들에게 은비 사례가 특별한 사례여서 원장 수녀의 관여가 두드러졌는지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성가정입양원의 원장은 직접 사례 관리에 관여하는 실무형 관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원장의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성가정입양원에서 기관장으로 입양 업무를 총괄하기 이전에 입양과 관련된 교육이나 경력이 전무했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만난 성가정입양원의 종사자들은 은비 사례가 본인의 첫 입양 사례 또는 첫 연장아 입양 사례라고 답변했다.

입양기관 종사자의 기준은 ①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면 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1).

기관 종사자의 교육에 대하여는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개시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입양특례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더라도 다른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별도의 입양 업무에 대한 교육 이수와 무관하게 입양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 개선 필요사항

- 단기적으로는 아동에게 대안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양 절차인 만큼, 입양 기관 종사자의 자격과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입양 업무 경력이 없는 기관 종사자가 입양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에는 입양 업무 개시 전에 별도의 자격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입양기관 종사자의 자격과 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 성폭력상담원 전문가 교육과정과 같은 입양상담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입양업무를 개시하는 모든 입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입양이 아동인권에 미칠 중대성을 감안하여 입양의 업무를 국가가 직접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마. 법정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 방임

입양기관의 장인 남○○원장은 입양특례법 제22조에 의해 은비의 친모가 은비를 성가정입양원에 맡겼을 때부터 은비의 법정후견인의 지위를 갖는다. 후견인의 직무 범위에 대해 입양특례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45조, 제913조). 즉, 입양기관의 장이자 은비의 법정후견인이었던 남○○원장은 은비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은비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남○○원장은 2016. 4. 13. 2차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예비양부모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은비가 병원에 입·퇴원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본인이 목격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남○○원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1차 병원 입원과 퇴원 과정, 입원 전에 보인 불안행동, 입원기간 동안 양부모와 주고 받은 상호 작용에 대한 보고, 아동이 불안 행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보호 요청 및 일관되고 부드러운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함.<sup>3)</sup>”

“은비는 퇴원후 다소 말라 보였음. 날카로운 눈빛은 다소 부드러워진 것 같아 보였고 양부모는 큰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보고함. 욕구가 좌절될 때 울며 벽에 몸을 부딪히며 떼를 쓰기는 하지만 과도한 문제행동정도는 아니고 강도나 횟수는 줄고 있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였음.<sup>4)</sup>”

2016. 4. 20. 남○○원장은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2차 가정의 예비양부모로부터 1차 응급실행 당시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되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2016. 6. 1. 남

3) 성가정입양원의 남인순 의원실 제출자료 29쪽.

4) 성가정입양원의 남인순 의원실 제출자료 29쪽.

○○원장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법원에 보정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은비의 응급실행과 예비 양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2017. 1. 13. 성가정입양원 현장조사 당시 왜 법원에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진상조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남○○원장은 당시 경황이 없었고, 보고의무 사항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은비의 법정후견인으로서 남○○원장은 무엇보다도 은비를 건강상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1차적인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장은 사건 인지 후, 은비를 병원에 다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1차 아동학대의심신고의 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직접 병원 및 경찰을 상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남○○원장의 보호의무 해태는 학대 행위자에게 2차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있기까지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 개선 필요사항

- 단기적으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동의 건강상 위해한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무조건 입양 심사를 진행 중인 법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입양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법정후견인의 역할과 의무를 재고하여야 한다. 친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입양기관의 장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여 관계 법령에 명시하도록 개정해야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같이 입양기관의 장이 무조건 입양의뢰된 아동의 법정후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모에 의한 아동양육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양육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후견인 지정 절차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고 법정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결연이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에 100% 일임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예비입양부모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적 주체가 결연을 결정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

## 바. 친생부모의 즉시 항고권 침해

2016. 7. 22. 서울가정법원은 은비의 2차 위탁 부모에게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은비는 뇌사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위탁 부모는 아동학대 가해 혐의자로 신고된 상태였다. 2016. 7월 말경, 성가정입양원은 서울가정법원에 은비의 친부모 명의의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했다. 2017. 1. 13. 성가정입양원 현장조사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즉시항고포기서류가 친부모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생부의 즉시항고포기서는 담당 상담원이 유선으로 항고 포기의사를 확인하고, 성가정입양원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만들어 날인했다. 친부의 항고 포기의사를 확인할 당시 성가정입양원은 친부에게 은비의 1차, 2차 응급실행 및 뇌사 상태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친부는 은비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고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친모의 경우에는 유선상, 온라인상으로 결국 연락이 닿질 않아, 입양 관련 기록에 기재된 친모의 이전 핸드폰 번호로 문자만 발송한 후, 친모로부터 직접 답신을 받거나 정확히 의사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가정입양원에서 단독으로 항고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친모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생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입양의사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 즉시항고포기의사를 밝힌 후 뒤늦게 은비의 상태를 알게 된 친생부모는 아이를 데려가서 본인들이 키울 의사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난 이후로 항고 포기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성가정입양원이 적시에 은비의 상태를 친생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항고포기절차를 진행한 성가정입양원의 입양업무진행으로 인하여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철회권 및 친권행사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말았다. 또한 성가정입양원이 친모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친모 명의의 즉시항고포기서를 작성하고 친모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개선 필요사항

- 입양의뢰한 친생부모에게 최소한 입양허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아동의 건강 및 보호 상태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
- 친생부모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친생부모 명의의 즉시항고포기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행위는 현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V

## 제도 개선 제안

1.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3.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
4. 친부모 양육지원



# V

## 제도 개선 제안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에 아동 입양학대 발생의 흐름에 따라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양제도 개선방안(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조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친부모 양육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 1.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양은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가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영구 대리 보호서비스’이다. 또한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새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적, 법적 과정으로 (Costin, Bell & Downs, 1991), 아동과 친생부모 간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다(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입양은 한 사람의 평생과 관련된 문제로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친생부모는 물론 이들 입양삼자 각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결과는 입양 삼자가 행동·정서 또는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Winkler, Brown, Keppel & Blanchard, 1988). 입양은 특히 입양아동이 어디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서비스로서 아동복지사업 중 아동의 평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입양실천 전 과정이 그 누구보다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장하는 방식 즉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실천은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급증한 고아와 혼혈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입양절차를 마련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입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진행하다가 2011년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친생가족의 양육 우선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목적으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2000년

에 시작한 한국입양홍보회의 공개입양 활동과 맞물려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고, 입양비용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다. 더불어 입양은 '좋은 일'이며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인식(가톨릭신문, 2016)이 자리 잡으며 한 아이라도 더 빨리 입양가정의 품에 안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SBS 뉴스, 2015). 이렇게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은 입양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입양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실천은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낳았고, 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이미 60년이 넘은 역사에도 우리나라 입양실천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선행 연구와 기존 자료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입양 전 가정조사와 예비입양 부모교육, 입양과정 중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위탁, 입양 후 사후 서비스,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과 교육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의 입양실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양실천이 아동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sup>5)</sup>

## I. 우리나라 입양실천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입양실천은 지금까지 '국내입양활성화'의 가치 아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중심보다는 입양부모 중심, 기관의 편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과정과 선행 연구, 기존 자료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입양 전 실천의 현황과 문제점

가의 계승을 위해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단순입양과는 달리 친생부모의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영구적인 대체 가족을 만들어주는 완전입양 제도의 특징은 첫째,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둘째,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양육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이경은, 2017).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후자와 관련한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정조사: 예비 입양 부모 평가와 준비 과정

가정조사는 모든 예비 입양가족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

5) 입양실천에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본 토론회에서 '원가정 보호와 지원'에 관한 발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양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예비 입양가족을 교육하고 준비한다. 둘째, 예비 입양 가족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예비 입양 가족이 어떤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하면서 양육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입양은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가정조사 과정은 입양부모가 한평생 입양아동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가정환경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입양인의 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는 입양인과 입양가정과의 관계이다(박인선, 1994). 입양부모는 아동을 지속해서 애정으로 보호·양육 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예비 입양 부모의 자격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입양기관과 종사자는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에 따르면 양친가정조사서에는 1.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 동기 2.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생활, 그 밖의 가족 상황 3. 양친이 될 사람의 현재 수입과 재산상태 5. 양친이 될 사람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그 밖의 건강 상태 6. 양친이 될 사람의 인격·품성과 종교관 등 7. 그 밖의 특기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맨 마지막에 조사자의 의견을 적게 되어 있다. 또한 가정조사는 가정과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며 1회 이상은 사진 통보 없이 방문하여 조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 입양가정에서 사망한 은비의 1차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양 전제 가정 위탁<sup>6)</sup>으로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총 4개월 20여 일이 걸렸다. 선보기 후 결연의사 확인, 면회, 가정체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결정하였다. 반면 2차 예비 입양 부모가 은비를 집으로 데려간 절차는 더욱 간소했다. 2차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입양 전제 가정 위탁을 개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개월 10일 정도였다. 아동 선보기와 결연의사 확인, 가정체험의 개시는 모두 같은 날 양친가정조사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별도의 면회나 가정방문은 없었고, 단계별 평가와 사정도 부재했다. 또한 2차 예비 양 부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입양기관 원장이 긴급중재로 개입한 후에도 양육 상황이나 아동의 복리 상태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 조치 없이 같은 날 입양 전제 가정 위탁으로 전환하였다.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을 전제로 은비를 위탁한 두 가정의 가정조사 과정을 보면 단계별로 사례에 개입하는 종사자가 달랐다. 성가정입양원의 경우 보육교사와 입양상담원으로 체계를 이원화하고 있어 보육교사는 아동의 보육만을 전담하고, 입양 절차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입양상담 업무는 초기 아동 인테이크 상담(친생모 대상)과 예비양부모를 상대하는 입양 상담 업무로 분리하고 있었다. 입양 상담 절차에서 입양상담원은 일반적인 서류 절차와 가정방문 등을 맡아 진행하였고, 예비 양부모의 기관 내방 상담, 아동 선보기와 결연 절차는 원장과 부장이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조사 과정은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욕구를 잘 충족하고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할 뿐 아니라, 입양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6) 입양 전제 가정 위탁이란 입양 대상 아동이 법원 허가가 나기 전에 애착 형성과 안전한 적응을 위해 결연된 입양가정에 서 위탁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 일인지를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예비 입양 가정 조사 전 과정은 한 명의 입양전문가가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소통하며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성가정입양원에서처럼 가정조사 과정이 분절된 상태에서 5~6명의 입양상담원이 관여해서는 은비와 같이 분리 경험을 여러 번 한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비 입양 부모를 교육하고 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비가정에 그러한 양육능력이 있는지도 적절히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허술하고도 비전문적인 입양실천은 결국 대구 사건에서와 같이 입양아동의 사망뿐 아니라 훌륭한 입양가정으로 존경받던 가정의 파멸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한다.

## 2) 예비 입양 부모 교육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영구적인 가정을 만들어주는 아동보호 서비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선하고 좋은 일이며 입양부모는 여전히 선행을 베푸는 존재로 주목을 받고, 입양부모가 아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남아는 입양현장에서 외면 받고 여아를 입양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현실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으며(문화일보, 2013),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나치게 완화된 양부모의 자격을 더욱 완화하고, 입양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좀 더 쉽게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뉴스1, 2013)도 있다.

이는 입양부모와 기관 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 원칙을 위배한다. 입양가정은 일반가정보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입양부모가 입양가정과 일반가정의 차이를 편안하게 수용하고 입양아동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울 때 아동들도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날 수 있다(Noh, 1989). 따라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은 입양 이후 삶의 여러 문제를 조망하고 준비하도록 돋는 과정으로 필요하다. 또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은 부모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부모를 관찰·평가하는 가정조사 일부로서 담당 실무자는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 입양 부모를 관찰하고 입양 부모가 지녀야 할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표 1> 주요 입양기관 예비 입양부모 교육 운영 비교

분류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방법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소그룹토의	강의 사례발표 영상물관람
강사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입양청소년	실무자 학계전문가 입양부모
교육인원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40명 내외
교육내용 (공통)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부모 사례발표			

출처: 변미희·안재진·강지현,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하루 8시간,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교육은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는 입양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입양부모가 담당한다. 교육 인원은 평균 40명 내외이며 부부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4대 입양기관이 시행하는 예비입양 부모교육 형태를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표 2> 은비의 1차 예비 입양부모 교육내용 (2015. 6.13)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 (시간)	강사명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의 효과	시청각자료 강의	2015.6.13 (1.0)	박00 임상심리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경험 나누기 - 자녀양육방법 (애착증진)	사례발표 강의	2015.6.13 (2.0)	이00 입양모 이00 입양모 강00 심리학박사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인 사례 나누기 - 입양아동 심리, 정서 - 입양부모준비	사례발표 강의	2015.6.13 (2.0)	김00 노00 남00 원장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후서비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가족모임 소개	강의 시청각자료	2015.6.13 (1.0)	박00 사회복지사 송00 사회복지사
기타	-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강의	2015.6.13 (0.6)	송00 사회복지사 남00 원장 박00 입양상담부장
	- 입양관련 영상을 시청	시청각자료	(0.4)	
	- 소그룹활동, Q&A	토의	(1.0)	

출처: 성가정입양원, 2016.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성가정입양원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비의 1차 예비 입양 부모 또한 8시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은 부모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과 입양 실무 매뉴얼이 제시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표 3> 은비의 2차 예비 입양부모 교육내용 (2015.12.5)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 (시간)	강사명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 입양과정 및 절차 - 입양의 효과	시청각자료 강의	2015.12.5 (1.0)	박00 사회복지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안내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부모경험 나누기 - 자녀양육방법(입양가족 주기 및 부모준비)	사례발표 강의	2015.12.5 (2.0)	이00 입양모 이00 입양모 남00 원장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인 사례 나누기 - 아동심리 및 정서 - 입양아동의 심리, 정서	사례발표 강의	2015.12.5 (2.0)	김00 입양인 노00 입양인 남00 원장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사후서비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가족모임소개	강의 시청각자료	2015.12.5 (1.0)	박00 사회복지사
기타	-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강의	2015.12.5 (0.6)	송00 사회복지사 남00원장 박00 입양상담 부장
	- 입양관련 영상을 시청	시청각자료	(0.4)	
	- 소그룹활동, Q&A	토의	(1.0)	
연장아 입양준비	- 연장입양아동의 발달 특 성	부부상담 교육	2015.12.19	남00 원장

출처: 성가정입양원, 2016.

은비의 2차 예비 입양부모는 2015년 12월 5일 하루 8시간에 걸쳐 <표 3> 과 같이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은 1차 부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장아 입양 준비’라는 주제의 교육은 부모가 은비를 처음 선보고 집으로 데리고 간 날(2015. 12. 19) 원장이 시행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미 입양전체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후에 원장이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을 부모교육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전체 가정위탁이 이루어진 후 은비의 불안 행동에 대해 원장이 총 7회, 가정방문과 전화통화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한 것으로 보아 아동의 배치 전 연장아 입양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가정입양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입양 부모교육은 일회성 교육이고, 모든 교육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예비 입

양 부모가 자신의 삶과 입양동기 등을 성찰하고 입양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등을 숙고하고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게 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전체 강의의 절반 이상을 입양 절차,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전달에 할애하고 입양의 주요 이슈를 다루거나 입양가족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돋는 내용은 불과 1~2시간에 불과해 예비 입양 부모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신생아 입양과 연장아 입양, 난임 가정의 입양과 유자녀가정의 입양 등 다양한 참여가정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세분화하고 심화한 교육 내용이 없어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입양 후 자녀양육과 입양가정의 과제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은비와 같은 연장아동은 만 1세 미만인 신생아보다 적응기간이 오래 걸리고 입양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므로 더욱 철저한 부모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연장아동 사례에 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초기 적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지지해줄 필요가 있지만, 현재 연장아 입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화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이나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예비 입양 부모교육의 첫 시간에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에 대한 강의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제도인 ‘완전입양’은 가의 계승을 위해 입양하던 이전의 ‘단순입양’ 혹은 ‘불완전 입양’과 효력이 다르다. 단순 입양이 입양 이후에 친부모와의 혈연관계는 유지되고, 상속권도 보장되었던 것과 달리 ‘완전입양’은 생애 초기부터 입양부모의 가정에서 출생한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부여받고 법률적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 ‘완전입양’은 입양가정 내 아동 지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친생부모와의 모든 혈연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파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파양은 입양부모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입양 후 아동의 입양가정 내 자녀 됨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 완전입양과 파양은 아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이경은, 2017)임에도 교육의 첫 시간부터 파양의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입양부모에게 아동을 키우다가 정말 힘들면 파양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 2. 입양과정에서의 실천 현황과 문제점

### 1)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 위탁

아동 결연이란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예비 입양가정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양이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된 아동을 결연하는 일이며, 입양 전제 가정 위탁이란 입양대상 아동이 법원 허가가 나기 이전 애착 형성과 안전한 적응을 위해 결연된 입양가정에서 위탁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sup>7)</sup>에서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비는 입양 허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1차 예비 입양가정에 가정 체험의 형태로 위탁(2015.7.24~2015.11.27)되었다가 귀원 조처되었고, 다시 2차 예비 입양가정에 가정체험의 형태로 위탁(2015.12.19~2016.7.21) 보내진 상태였다. 은비는 이미 아동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인 2016년 7월 22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예비양부모에게 입양허가가 결정되었다.

법원의 허가 절차는 2011년에 전부 개정한 입양특례법을 2012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입양은 법원에서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료된다. 입양허가심판은 일반 재판보다 간단하게 진행하지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허가 결정까지 3~6개월가량 걸리다 보니 예전보다 입양 절차가 길어지면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의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은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을 거스르며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적절한 심판 절차를 거친 후 아동을 인도하자는 것이지만,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에서는 입양기관장 단독의 결정으로 아동을 예비 입양가정에 인도할 수 있다.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은 공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으로 인도함으로써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게 한다.

아울러 은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아이를 입양가정의 품으로 빨리 보낼수록 좋다’라는 생각이다. 아동과 결연할 입양가정을 적격한 가정조사와 교육을 통해 준비하였다며 바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비의 경우 첫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 이는 분명 아동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전문적인 실천이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은 ‘이미 넷이나 입양해서 잘 키워 유학까지 보낸 훌륭한 부모’이므로 어떤 아이도 잘 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입양가정의 조사과정은 한 달 만에 끝났다. 모든 입양아동은 아동의 연령과 특성, 살아온 배경 등에 따라 다른 욕구를 가진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리지만 이미 분리 경험을 여러 번 한 은비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입양기관은 대구의 입양부모가 이미 훌륭한 입양부모로 칭송받고 있으므로 어떤 아동이든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고 연장아동에 대한 입양동기와 양육능력을 파악하는 철저한 가정조사는 물론 아동의 욕구와 예견되는 양육 어려움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준비도 없이 은비를 맡겼다. 그 결과 은비는 물론 대구 입양가정 구성원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비 입양가정에 혈연관계도 아닌 어린 남자아이를 은비와 함께 결연해서 보냄으로써 문제 발생의 소지를 훨씬 더 증대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천은 입

7) 제31조(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양실천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비전문적인 행태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받아 본 성가정입양원 자료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쌍둥이를 원하는 입양부모에게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같은 해에 탄생한 두 아이를 함께 결연해서 보내는 등 입양부모가 원한다면 어떤 비전문적인 실천도 마다치 않았다. 이러한 입양부모 중심 실천은 절대 아동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생애주기별로 겪을 다양한 이슈에 관한 사전 준비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예비 입양가정조사와 부모교육은 바로 그러한 입양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욕구를 조정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을 하게 하거나 아예 입양을 사전에 포기하게 돋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입양동기와 기대로 발생할 입양아동과 가정의 피해를 예방하고,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양특례법 제24조에는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과 재입양 의뢰 아동의 보호에 관해 명시하면서 첫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둘째,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할 동기가 있는 예비입양 부모 발굴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슈퍼비전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슈퍼비전을 맡을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공인된 자격이 있는 입양 관련 전문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이 모든 과정은 입양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

### 3. 입양 후 실천 현황과 문제점

#### 1) 사후서비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25조<sup>8)</sup>에서는 사후서비스를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 담당자가 입양 부모와 입양자녀의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가정에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에서는 국내입양인 사후관리가 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 입양아동과 부모 교육,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 입양아동과

8)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족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입양홍보회의 공개입양운동과 더불어 국내 입양가족이 국가와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입양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과 입양홍보 운동이 맞물리며 정부는 입양가정에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입양수수료 270만 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16세까지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18세까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심리치료비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입양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과 상담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였고, 그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입양 부모는 전문적인 사후서비스뿐 아니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의 상향 조정, 입양부모를 위한 심리치료비, 의료급여 연장, 대학 학비 지원 등 여전히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16). 선진외국에서도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형제가 있는 아동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위탁/입양의 형태로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신이 원하는 건강한 영아를 입양할 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하는 국가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입양부모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러한 지원이 입양부모로 하여금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자신의 자녀를 얻는 일이며 아동을 위한 모든 의무와 권리인 친권이 자신에게 완전히 옮겨오는 입양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와 사회를 대신해서 키워주는 가정위탁과 혼동하게 하는 것 같다.

입양부모는 선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은 입양아동과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입양부모가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입양부모는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선한 일을 한 특별한 사람으로서 아동을 잘 알아서 키울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입양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모든 것을 아이 탓으로 돌리고 아이의 치료에만 열중하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입양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도움을 받을 자원이 부족하여 적절한 사후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아동의 파양이나 은비사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관리는 현재 입양특례법상 규정된 사후관리와 위탁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후서비스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입양특례법상 규정된 사후 1년간의 관리는 입양 후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발달상황과 적응상황, 어려움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입양가정과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면 이후 사후서비스 사업이나 별도 사례관리 등으로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변미희·안재진·신혜령, 2016).

현재 우리나라 입양실천에서는 사후서비스 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해마다 중앙입양원이 위탁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해 진행하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입양기관이나 입양

사후서비스기관, 입양 자조모임 등이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형편이다. 2016년 제공한 국내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입양가족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입양가족 교육, 입양가족 행사나 모임 지원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체계가 부재하여 입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어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주로 서울·경기권에 위치한 기관을 중심으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 입양가정 소수에게 서비스가 편중되기도 하고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은 정보가 없고 거리가 멀어 사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식적인 체계가 없고 지리적 제약이 많다 보니 국내 입양가정은 온라인 카페나 가까운 지역 모임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지받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역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주로 입양 경험을 가진 선배가정이지만, 전문지식과 지원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기에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변미희 외, 2016).

현재 입양절차는 크게 민법의 규정에 따른 ‘민간입양’과 입양특례법에 따른 ‘기관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6세 입양아의 사망사건은 ‘민간입양’으로 진행된 사례로 우리나라 ‘민간입양’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숨진 아동의 입양부는 사기와 폭력 등 전과 10범이 넘는 위험인물이었지만 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예비입양 부모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민간입양’에서는 입양 후 아동의 안전과 적응을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부모의 자격조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입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정책신문, 2017).

#### 4. 입양기관 실무자 실천 현황과 문제점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영구 대리 보호서비스’로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아동보호 서비스이다. 입양은 법원허가를 얻는 순간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라 평생에 걸쳐 다양한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완성되어 간다. 그러므로 입양실천을 하는 실무자는 입양 삼자인 입양아/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이들 삼자가 겪는 문제와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 실무자의 자격과 역량은 성공적인 입양과 직결되는 요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입양사업은 대부분 입양 알선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입양실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양사업의 대상은 입양아동뿐 아니라 입양부모와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이들 삼자의 욕구와 이해는 서로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입양 실무자는 그것을 각각 존중하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며,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입양 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평생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입양실천은 아동은 물론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평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고도의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박인선, 1995). 그러나 우리나라 입양 실무자의 자격 기준은 매우 허술하다.

### 1)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

우리나라 입양기관 종사자의 기준은 1.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하나를 충족하면 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1). 기관 종사자 교육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개시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다(입양특례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더라도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입양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입양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국내입양기관 실무자의 학력을 보면 약 33%가 대학원 졸업 이상, 나머지는 대학 졸업으로 나타났고, 전공분야는 85%가 사회복지, 15%가 사회복지를 상담과 함께 복수전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변미희 외, 2016). 하지만 현재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에서 입양실천에 관해 배울 과목이 거의 없으며, 아동복지론 등의 교과목에 일부 있다 해도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에 관해 특화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입양기관 실무자가 될 수 있고, 입양실천 업무를 할 수 있다.

성가정입양원의 경우 신입 실무자들은 입사 이후 입양 실무나 입양이슈에 관해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을 혼자 익혀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이렇게 입양 실무나 입양이슈에 관한 기초 지식조차 없는 실무자가 예비 입양부모를 제대로 교육·준비하고, 입양부모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명의 기관종사자가 한 개 사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성가정입양원의 실천은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양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가정입양원 내 전체 사례회의는 월 2회 이루어졌으며, 동 사례회의에서는 기관에서 보호 중인 모든 아동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공유하였다고 했다. 아동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회의는 부재하였고, 원장이 입양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다. 별도의 자문회의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집단적인 검토와 자문, 모니터링할 체계가 부재했다((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 2) 입양실무자 보수교육

우리나라 국내입양기관 종사자는 실무자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7)의 입양 실무 메뉴얼에서는 입양실무자 보수교육 내용을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4)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5) 입양 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입양기관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 실무자와 일반 실무자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동일하지만 내용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교육내용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우리나라 입양기관 실무자 보수교육 내용

과정	기관장 과정 (1일 4시간)	입양 정책과 향후 방향(김진철 사무관) 토론 및 간담회: 입양 정보 공개와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변미희 교수)	
	종사자 과정 (1일 8시간)	신규 실무자	아동의 권리(한국인권재단) 아동의 적응과 지역자원 연계(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실무(홀트아동복지회) 입양 법적 절차(동방사회복지회) 입양기록보존과 사후서비스(중앙입양원)
		실무자	아동의 권리보호(한국인권재단) 아동의 적응과 지역자원 연계(홀트아동복지회) 상담기법 활용(이야기치료, 해결중심 상담, 인지행동 중 선택) 입양기록 보존 및 사후서비스(중앙입양원)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보수교육의 목적은 입양기관 종사자가 입양사업 대상자를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돋는 데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입양기관 종사자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업무 착수를 위한 준비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볼 때 보수교육의 내용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나 보수교육 내용 대부분이 입양 삼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보다는 아동의 권리와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한국인권재단에 맡겨서 한다든지, 입양의 법적 절차, 입양기록보존 등과 같은 행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양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양실무자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슈퍼비전과 교육과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담기법을 소개하는 1~2시간의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에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나아가 보수교육의 절반 이상을 막상 교육을 받아야 할 입양기관 관리자가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전문성이 세워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는 입양실무자 보수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서 입양기관 실무자 23명 중 12명(52.2%)가 예비입양 부모를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연장 아동 입양과 입양 아동 심리 발달, 입양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더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이숙정·유지현·민성혜·신혜원, 2016).

## II. 우리나라 입양실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입양 실천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선행연구와 외국의 경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입양 전 실천 개선방안

#### 1) 가정조사: 예비 입양 부모 평가와 준비과정

우리나라 입양실천이 좀 더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동의 원 가족 보호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아동을 원 가족에서 쉽게 분리하여 입양으로 대안 가정을 찾아주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배제하는 실천이 될 수 있다.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대안임이 분명해지면 아동과 결연할 예비 입양 부모의 가정조사와 교육을 내실 있고 깊이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가정조사는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가정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조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조사 과정을 표준화하고,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자격 있는 실무자를 교육·훈련하여 예비 입양부모의 교육과 준비, 양육능력 평가가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가정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첫 단계로 입양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준비와 교육, 지지가 미흡할수록 입양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cRoy, 1999; Nelson, 1985; Smith, Howard, Garnier & Ryan, 2006,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4 재인용). 또한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도 입양의 실패 요인이었다(Barth & Berry, 1988; McRoy, 1999,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4 재인용). 가정조사는 예비 입양부모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할 뿐 아니라 입양아동을 키우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정조사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증진하여야 한다.

가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입양 아동의 욕구에 가장 잘 맞는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아동 양육의 특수성에 관하여 입양가족을 교육·준비시키고, 예비 입양부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합한 입양아동과 결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입양가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정조사 과정에 공통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1. 오리엔테이션: 초기 정보제공을 위한 세션으로 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입양절차를 소개한다.

2. 교육/훈련: 예비 입양부모는 본격적인 가정조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이나 과정 중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가족을 기다리는 아동의 욕구와 입양이슈,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어떤 아동을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돋는다.

3. 면접: 실무자는 가정조사 과정에서 예비 입양부모를 여러 번 면접하면서 가족을 이해해 나가고 입양가족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돋는다. 면접은 예비 입양부모 둘 다 함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만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예비 입양부모의 1) 가족배경, 2) 교육/직업, 3) 부부관계, 4) 일상생활, 5) 양육경험, 6) 이웃과 지역사회, 7) 종교/가치관, 8) 입양에 대한 느낌과 준비된 정도, 9) 지지체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면접은 예비입양부모가 상실과 애도, 신뢰와 애착, 아동기에 경험한 정신적 충격, 생애주기별 발달단계, 가족의 역동성 등 입양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를 배우고 자신을 성찰할 시간과 과정이 된다. 예비 입양가정에 이미 아이들이 있을 때는 입양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등을 묻는 면접도 한다.

4. 가정방문: 장차 입양아동이 살게 될 곳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이 잘 곳은 물론 아동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나 장소는 없는지 살피고, 집 전체와 이웃 환경 등을 살핀다.

5. 건강 진단서: 예비 입양부모는 담당 의사로부터 자신들이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고,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상하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6. 수입과 건강보험에 관한 증명: 가정의 재정을 적절하고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입양아동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7. 범죄와 아동학대 기록 확인: 범죄와 아동학대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8. 자서전과 같은 자기 이야기: 예비 입양 부모는 자서전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예비 입양부모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가정조사서를 서술하는 데는 물론 예비 입양부모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이슈를 성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입양기관 대부분은 질문목

록을 제공함으로써 자서전을 서술하는 데 도움을 준다.

9. 추천서: 수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예비 입양부모를 다양한 상황에서 본 경험이 있고, 집에도 방문했었고, 예비 입양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3~4명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예비 입양가족의 친척은 추천인이 될 수 없고, 주로 친한 친구, 이웃이나 교회 지인 등이 된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실무자에게 직접 보내게 하는 데 이는 예비 입양가족과 그들의 지지체계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입양실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에도 양친가정조사서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양친 가정조사서는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동기와 성장배경, 가족상황 등을 면접하고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 제시하는 가정조사 매뉴얼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어느 범위나 깊이까지 다루어야 하는지 상세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의 상담과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조사서는 입양기관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각 실무자의 입양실천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따라 그 내용에 편차가 매우 크게 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가정조사서에 포함할 주요내용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 항목별로 필요한 조사내용을 세분화하고 있고,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질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탐침질문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자세하게 마련하여 입양사례별 가정조사서를 어느 정도 표준화하고 있다(이숙정 외, 2016).

최근 미국 22개 주와 캐나다 5개 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가정조사 과정을 구체화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고안·개발한 ‘가족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평가(SAFE: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의 활용을 의무화하였다. SAFE는 1999년 미국에서 공공과 민간 아동복지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아동협회(Consortium for Children)가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의 가정 조사를 위해 개발한 방법이다. SAFE는 기존 가정조사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려에서 개발되었다. 첫째, 가정조사에 통일성이 없다. 기관마다 가정조사방법이 다양하고 피상적이어서 약물남용, 가족폭력, 폭력적인 양육방법, 성폭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다. 둘째, 심리·사회적 평가를 하지 못한다. 기존 가정조사서는 주로 가족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고하는 정도에 머물러 부모의 입양아동 양육능력과 준비정도와 관련된 가족기능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 셋째, 효과적인 정보수집이나 분석도구가 되지 못한다. 입양부모의 자서전과 같은 정보수집 도구는 적절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평가하지 못한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종종 입양부모의 적합성과 관련 있는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편견에 따른 판단이 내려진다. 다섯째, 부적절한 가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정조사서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거나 아동 배치와 관련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다(Consortium for Children, 2005).

기존 가정조사서는 자서전과 같이 예비 입양부모의 자기 보고식 도구를 활용하면서 입양에 필요한 핵심 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관해 읽거나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SAFE는 구조화되어 있어 단계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질문지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입양부모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슈에 집중하게 한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과 이슈를 평가하는 도형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지원자의 양육능력과 기능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된다.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이 입양 아동 양육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도 초점을 맞추게 한다. 가정조사서는 아동 배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과 염려되는 부분뿐 아니라 어떤 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를 상세하고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예리한 분석결과이어야 한다. 그러한 분석 없이는 예비 입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동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이는 종종 아동학대나 재배치로 이어진다. 가정조사를 잘하는 것은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를 모두 보호하는 길이다(Consortium for Children 홈페이지, 2017). 대구 입양가정 학대 사건도 가정조사 과정이 철저했다면 아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SAFE의 활용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실천현장에서 SAFE를 활용하는 일선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SAFE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입양가족을 평가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발견하는 데 기존 가정조사 방법보다 더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ea, Barth, Chintapalli & Buchana, 2009a). 실무자 145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SAFE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는 기존 방법보다 SAFE를 선호하였는데, 좀 더 경험이 적은 실무자가 경험이 많은 실무자나 슈퍼바이저보다 SAFE의 사용을 특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ea, Barth, Chintapalli & Buchana, 2009b).<sup>9)</sup>

**둘째, 예비 입양가정조사 보고서는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실무자가 담당하되 철저한 점검 절차를 통해 완성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가정조사는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실무자가 전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한 예비 입양가정을 여러 사회복지사가 준비시키거나, 한 사례를 여러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때도 입양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estinger, 1990; McRoy, 1999'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4 재인용.) 한 예비 입양가정의 조사에 여러 다른 실무자가 관여할 때는 입양가족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아동이 배치된 후에도 가족을 적절히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성가정입양원에서와같이 여러 명의 실무자가 한 가정을 단계별로 분절된 상태에서 만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예비 입양 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9) SAFE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예비 입양아동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므로 기관 실무자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철저한 점검절차를 통해 승인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입양 사업을 민간기관이 진행함으로써 기관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과는 독립된 기구가 예비 입양부모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입양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의 입양실천 과정을 보면 예비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과정이 몇 단계를 거쳐 얼마나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영국의 입양실천은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 산하 공공 입양기관에서 담당하는 데 가정조사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한다. 사정 전 절차(Pre-Assessment Process)와 결정단계(Pre-Assessment Decision)를 포함하는 제1단계는 입양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기초 교육과 준비단계로서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관심과 양육능력을 탐색하고 건강문제, 범죄기록 등에 대한 검토와 추천인의 면접을 통해 제2단계로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총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예비 입양부모도 입양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양육능력을 알아가고 판단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돋는다. 제1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예비 입양부모가 6개월 이내에 제2단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1단계를 되풀이해야 한다. 집중적인 교육과 사정(Assessment Process)을 하는 제2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는 예비 입양부모에게 사정절차와 예상 기간(4개월), 교육에 관한 사항, 입양 승인결정 절차, 입양패널(Adoption Panel)의 역할, 독립재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Mechanism) 등 제2단계의 진행방법과 예비 입양부모의 의무이행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이에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과정은 입양부모가 엄격한 입양절차의 필요성을 사전에 이해하고 협조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1단계와 제2단계는 보통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같은 사람이 가족이 입양하기에 적격한지, 적격하다면 어떤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격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진행한 경우 보고서에는 담당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슈퍼바이저도 서명한다. 보고서를 입양기관과 독립된 다학문적 배경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양패널<sup>10)</sup>에 제출하면 예비 입양가정에 아동을 배치해도 될지를 기관 결정권자(Agency Decision-Maker)<sup>11)</sup>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기관 결정권자가 내린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는 독립 재검증절차 (Independent Review Mechanism)를 진행하는데, 이 패널 역시 기관과 독립된 사람으

10) 입양패널은 입양기관과 독립된 다학문적 기구로서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입양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패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위와 능력, 복합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설명할 능력, 중요한 이슈와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 능력, 탁월한 대인관계 능력, 말과 글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입양패널은 기관 결정권자가 1. 아동의 입양적격 여부, 2. 예비 입양가정의 적격여부와 예비 입양가정 승인의 철회, 3. 아동을 특정 예비 입양가정에 입양 보내야 하는지에 관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돋는 역할을 한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11) 기관 결정권자는 법으로 명시된 자격과 지식, 경험을 소지한 기관의 선임자로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없지만, 기관을 대신해서 위 3가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입양기관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로 구성해서 진행한다. 법원은 기관 결정권자가 사례에 관해 결정할 때 1. 자신의 법적 권한, 2. 입양패널에 제출한 보고서를 포함해서 사례와 관련된 모든 정보, 3. 입양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지켰는지 아닌지, 4. 예비 입양부모 관계의 안정성과 영구성, 5. 입양패널과 독립재검증패널의 권고와 이유, 6. 입양패널과 독립재검증패널의 마지막 회의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1년에 영아와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입양이 각각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스웨덴에서는 예비 입양가정 조사의 대부분이 해외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입양은 스웨덴국제입양당국(The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 Authority: the MIA)이라는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에 따라 무엇보다도 입양실천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포괄적인 사정은 지방 정부 사회복지위원회(Municipal Social Welfare Committee)의 사회 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소속 사회복지사가 수행한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처음부터 예비입양 가정이 입양에 관해 어떤 지식과 고정관념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입양준비를 위한 부모교육과 평가과정의 목적을 이해하게 돋고, 입양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하는 등 전체 입양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입양부모가 긍정적인 자세로 부모교육과 가정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돋는다. 사회복지사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지정한 예비입양 부모교육에 참여한 가정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입양가정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권고를 제안하는 서면보고서를 작성한다. 서면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명료해야 하고, 예비 입양부모의 강점과 단점, 입양동기, 아동에 대한 희망과 기대, 입양아동의 출생정보에 관한 알 권리에 대한 생각 등을 포함하고, 권고안은 설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보고서에 작성 날짜와 자신의 지위,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예비 입양부모의 적격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예비 입양가정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을 견제한다. 더욱이 서면보고서는 사회복지사의 권고안을 가정조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개의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 개선 필요사항

- 가정조사 과정을 표준화하고,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자격 있는 실무자를 교육·훈련하여 예비 입양부모의 교육과 준비, 양육능력 평가가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 예비 입양가정조사 보고서는 한 사람의 자격 있는 실무자가 담당하되 철저한 점검 절차를 통해 완성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2) 예비 입양부모 교육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잘 준비된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입양아동은

분리와 상실의 경험을 하는데, 특히 많은 분리와 상처를 경험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의 의미는 물론 입양아동의 욕구에 대한 지식과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가정조사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 결정을 하도록 돋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입양의 다양한 이슈와 어려움을 깊이 있게 성찰·이해하고, 입양이 자신과 가정에 꼭 필요한 일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정서적으로 준비하게 돋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예비 입양부모 교육이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을 아동의 욕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우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입양에서는 입양 삼자(아동, 친생부모, 양부모)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동은 친생부모의 필요로 버려지고, 양부모의 필요 충족을 위해 제공되면서, 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부모는 자선을 베푸는 존재로 주목받고, 아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되고, ‘대학생 미혼부모가 낳은 건강한 여자 아동’과 같이 ‘상품가치’가 있는 아동만이 입양대상이 된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양부모의 자격 완화, 입양가정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입양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은 양부모의 위치를 시혜자로 강화하고, 이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도 많고, 자녀를 원하는 양부모도 많지만, 입양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입양이 성사됐다 하더라도, 자신을 시혜자로 여기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양부모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아동에게만 전가하고, 쉽게 아동을 포기하게 된다. 또한 양부모가 입양을 출산보다 열등한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친생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하여 입양과 위탁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고 아동의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박인선, 1995). 이렇게 양부모의 욕구충족에 초점이 맞춰진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원칙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양부모와 입양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구 사건의 경우에도 철저한 예비 입양부모 교육과 가정조사를 통해 양부모가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분리경험과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 은비가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예상하고 대처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방법을 모색하게 돋거나 아예 입양을 포기했더라면 은비도, 양부모 가정도 지금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입양부모와 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입양이 초래하는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예비 입양부모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가정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잘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입양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족과 아동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입양아동이 각자의 발달 배경에 따라 어떤 욕구가 있고, 생애주기별로 어떤 이슈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가정이 당면할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주로 입양절차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있어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이 과연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인지를 숙고하고 성찰할 기회를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특히 ‘완전입양’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파양(이경은, 2017)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전국적으로 입양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초점을 맞춘 통일된 고품질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입양당국(The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 Authority: the MIA)과 국가보건복지위원회(Swed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함께 예비 입양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자격을 갖춘 교육자를 훈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교육은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취약점을 이해하고,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 할 수 있게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예비 입양부모가 자신의 입양 동기와 입양과 관련해 고려할 윤리적 이슈와 개인적 이슈를 성찰하게 돋는다. 예비 입양부모는 특별히 애착관계와 삶의 연속성, 정체성, 상실에 따른 애도, 정신적 충격, 신체적·정서적 손상과 장애 등과 관련된 입양아동의 일반적, 특수한 욕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입양부모가 실제로 얼마나 교육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했는지와는 무관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 사회복지사는 예비 입양부모가 교육 과정에서 다른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가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 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새롭게 하게 된 생각이나 질문을 검토하고, 어떤 영역에서 지식과 이해를 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어떤 영역에서 좀 더 정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셋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공적 기관에서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중심으로 입양하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통일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훈련된 교육자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입양기관이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직접 설계하여 진행한다. 그 내용과 절차를 보면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의 의미를 성찰하고, 입양 이슈와 아동

의 욕구를 이해하고, 입양이 자신들 가정에 적합한 일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돋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입양을 결정하게 돋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성가정입양원에서 은비의 2차 예비 입양부모가 참석한 교육에서는 입양모와 입양인을 제외하고 강의도 모두 기관 원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다. 민간기관의 경우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결정은 기관 이익과 직결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기관은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 입양의 장단점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숙고하게 돋고 입양이 예비 입양부모에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기관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당연히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을 그저 좋은 일, 행복한 일, 선한 일로 여기면서 쉽게 결정하게 되고, 입양아동을 키우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예상도, 준비도 하지 한 상태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과도하게 당황하고 직질하게 대처하지 못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미 4명의 입양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한 훌륭한 입양부모라는 사회적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은비의 입양부모도 자신들의 입양동기에 대한 성찰이나 은비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은비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동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아동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된 비극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아동과 입양부모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처럼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 예비 입양부모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강사도 엄격한 자격 검증을 통해 선발하고 훈련함으로써 예비 입양부모가 진정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는 스웨덴에서도 처음에는 해외입양기관과 중개 역할만을 담당하는 인가기관에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하도록 맡겼었다. 하지만 정부감사를 통해 입양절차의 어떤 부분에라도 이권이 개입된 기관이 예비 부모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교육내용의 내용과 질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직접 그 일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국제입양당국과 국가보건복지위원회가 예비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강사의 자격과 지켜야 할 규칙<sup>12)</sup>을 설정하고, 강사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은 소집단 형태로 한 세션을 3시간 동안 총 7번 진행하며 예비 입양부모에게 입양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주말 이틀간 집중해서 2번에 걸쳐 하거나, 주말 4번에 걸쳐 진행한다.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서 표현되는 부모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안 되므로 교육을 담

12) 지방정부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이나 유아교육과 같은 인간행동 과학을 전공한 자
2.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자
3. 가정조사 과정의 단계와 방법을 아는 자
4. 집단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집단 과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5. 강사/교육자/트레이너로서 필요한 지식이 있고 훈련을 받은 자

그 외에도 지방정부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 강사가 다음과 같은 것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할 것
2. 정해진 교육과정이 다루는 다양한 내용에 관한 최근 연구내용과 정보를 알아보고 숙지할 것
3. 교육 참여자의 가정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슈퍼비전 집단에 참여하지 말 것
4. 입양의 중개에 관여하지 않을 것

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교육에 참여하는 예비 입양부모의 가정조사를 담당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에 관해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동의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 평가하는 사람은 가정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넷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입양대상 아동과 불임·난임 가정, 유자녀 가정 등 예비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좀 더 특수한 내용을 담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는 공통으로 포함할 내용이 많다. 하지만, 입양이 입양가정에게 미치는 영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연장아동 입양은 입양부모에게 신생아 입양과는 다른 기쁨과 도전을 안겨준다. 연장아동이 입양 전 누구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입양 후 적응과 행동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장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 입양부모는 자신들이 아동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아동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의 중요성, 연장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당면한 과제, 기존 입양가정에 연장아동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방법, 아동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입양아동이 변화에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유자녀 가족과 난임·불임 가족의 입양동기가 다르고, 입양과 관련해서 성찰해야 할 과제가 다를 수 있다. 특히 난임·불임 예비 입양부모는 자존감의 손상, 개인과 가족의 유전적 지속성에 대한 상실, 부부가 함께 임태한 아동에 대한 상실, 임신과 출산, 수유로부터 오는 신체적 만족감의 상실, 친생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의 상실, 인생의 통제력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Johnston, 1984).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는 적절한 애도 과정을 통해 난임·불임을 수용해야만 입양할 준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아동은 늘 차선책이 되거나 자신들이 낳지 못한 “이상적인 아동”을 대체할 완벽한 아동이 되어야 하고 아동이 보이는 모든 문제는 ‘나쁜 혈통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Schwam & Tuskan, 1979, Berman & Bufferd, 1986). 이런 이유에서 선진외국의 입양기관에서는 난임·불임 예비 입양부모가 출산 시도를 중단하고 1년 이상이 지나야만 입양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난임·불임에서 비롯한 상실의 경험을 해결하고, 입양을 출산보다 열등하지 않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돋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곤 한다.

은비 사건의 경우에도 2차 예비 입양가족이 연장아동 입양을 이해하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세분되고 심화한 맞춤형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양전문교육기관인 Adoption Learning Partners(ALP)은 온라인으로 다양한 입양관련

교육을 제공해 준다. 입양기관 중에는 필요에 따라 예비 입양부모에게 연장아동 입양 등에 관해서 이곳에서 추가로 교육받게 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정조사 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이미 입양한 부모, 입양전문가 등 입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을 지원해 준다. 교육과정은 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 연장아동 입양, 입양아동의 상실과 애도, 애착관계, 입양 후 학령기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최고 옹호자 되어주기, 입양아동과 훈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2시간짜리 과정이다(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다음은 Adoption Learning Partners에서 제공하는 의 연장아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표 6> 연장아 입양 교육**

구 분	내 용
연장아 입양에 대한 예상과 기대 고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아동 역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li> <li>· 입양아동을 가정 안으로 통합시키는 전략을 개발하기</li> <li>· 연장 입양아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기</li> <li>· 자신과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해하기</li> </ul>
연장 아동 입양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시에 아이가 잠들고 목욕하고 일어나는지</li> <li>· 아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li> <li>· 아이가 앓았던 병이 있는지</li> <li>·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li> <li>·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은 언제이고 어떤 했는지</li> <li>· 아이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지</li> <li>· 아이가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지</li> <li>·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li> <li>· 아이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li> </ul>
아이의 성장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적, 발달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정보</li> <li>·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배경</li> <li>· 배치에 관련된 이력</li> <li>· 교육 배경</li> </ul>
연장 아동이 낯설어 하는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만, 가족이 먹던 음식들을 아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li> <li>· 아이는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li> <li>· 아이는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서 잠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li> <li>·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li> <li>· 아이의 바뀐 환경이 너무 많은 가구와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심플하게 꾸미기</li> <li>· 너무 많은 사진과 그림, 너무 많은 장난감은 피하라.</li> </ul>
아이가 처음 가족이 된 1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날처럼 지내지 마라.</li> <li>· 너무 많은 외출과 관광을 하지 마라.</li> <li>· 큰 파티를 열지 마라.</li> <li>· 방문자를 최소한으로 줄여라.</li> <li>· 일과를 정하고 그래도 따라라.</li> <li>· 필요에 따라 가족의 규칙을 이행하라.</li> </ul>
아이의 일상을 구조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주라.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메뉴 선택을 단순하게 하라.</li> <li>· 낮잠과 잠자리: 낮잠과 잠자리는 모두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아이를 편안하게 해준다. 잠들기 전에 목욕하고 이야기를 해 주면 아이가 매일 저녁 무엇을 예상해도 좋을지 알게 해준다.</li> <li>· 숙제: 매일 같은 시간에 숙제할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하라. 숙제하고 책을 놓을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라.</li> <li>- 바깥놀이: 친척 집 방문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외출을 계획할 때는 아이가 미리 알도록 하라.</li> </ul>
아이의 섭식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겪어본 아이들은 자주 음식과 관련해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곤 한다. 그들은 음식을 비축해 놓거나, 폭식하거나, 한두 가지 음식만 먹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라도 모조리 먹어버리기도 한다. 부모는 가끔 이런 문제를 통제력의 이슈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과 건강을 생각해서 강제로 먹게 하려는 ‘옳은 일’을 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이다.</li> <li>· 음식은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아이는 당신이 음식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위로를 당신에게서 받는 위로로 이전할 것이다. 손으로 먹여주는 것, 식사시간을 재미나는 음식으로 흥겹게 하는 것, 같이 요리하는 것은 모두 부모를 위로와 음식과 연결하게 돋는다. 그러려면 음식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거실에서 퍼크닉을 하거나, 색이 예쁘고 이쁜 접시를 사서 식사시간에 사용하거나, 서로 먹여주거나, 그냥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준비하거나 같이 외식을 하면서 음식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주라.</li> </ul>

출처: 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 개선 필요사항

- 첫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 둘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입양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예비 입양부모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가정조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 셋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공적 기관에서 예비 입양부모가 아동중심으로 입양하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통일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훈련된 교육자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넷째, 예비 입양부모 교육은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입양대상 아동과 불임·난임 가정, 유자녀 가정 등 예비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좀 더 특수한 내용을 담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입양과정에서의 실천 개선방안

### 1) 아동 결연과 입양 전제 가정위탁

아동 결연이란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예비 입양가정과 입양대상 아동을 결연하는 일이며,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란 입양대상 아동이 법원 허가가 나기 이전에 애착 형성과 적응을 위해 결연된 입양가정에서 위탁의 형태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에서는 공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기관장 단독으로 아동을 예비 입양가정에 인도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도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공식적으로 입양하기 전 위탁가정의 형태로 시범 양육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철저히 아동중심으로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 은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 없이 예비 입양부모 입장에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입양대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을 위험에 놓이게 한다. 이에 입양 전제 가정 위탁이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엄격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가정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법원 허가는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적절한 아동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선진외국에서처럼 입양부모의 철저한 가정조사와 교육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으로 동시에 승인받고 난 후에만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배치한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적응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입양가정이 아동을 잘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입양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예비 입양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동시에 승인하여 입양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아동을 위탁·입양 가정에 배치한 후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친권박탈이 이루어지면 입양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양승인을 받은 모든 예비 입양가정에도 법원 허가가 나기 전에 아동을 배치한 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입양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해 조언하고 지지해 주고, 법원에 제출할 입양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한 후 처음 몇 주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첫 방문은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늦어도 4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첫 심사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입양승인이 나기까지 얼마나 자주 방문할 것인지는 배치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입양 배치 계획에 기록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스웨덴에서도 예비 입양가정은 아동이 배치되고 입양 승인이 나기까지는 위탁가정으로 간주한다. 특히 초기 적응이 가장 어렵고 중요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의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관찰, 지도·감독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지해 준다.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자주 가정을 방문할지는 예비 입양부모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승인을 위해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지방정부 사회복지위원회는 법원에 입양가정과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미국에서는 예비 입양가정에 아동을 배치한 후 입양 승인을 하기까지 보통 6개월 동안 아동과 가족이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 기간 동안 담당 사회복지사는 예비 입양가족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면 법원에 입양승인을 위한 법정심리를 신청한다. 먼저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 가능하고, 아동의 후견권을 가진 기관이 동의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면 판사는 법정심리에서 아동과 가정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입양을 승인할 수 있다(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 Permanency Network 홈페이지, 2017).

**둘째, 아동의 결연은 아동의 평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므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와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결연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동에게 어떤 가정을 결연할지를 결정할 때는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 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의 결연은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서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한 과업이다. 결연할 때는 예비 입양부 모가 아동이 현재 보이는 욕구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예비 입양부모의 양육능력, 기관 지원의 효과적인 사용, 지연의 방지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결연에 대한 접근은 현재 나와 있는 연구결과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실천이라고 밝혀진 것을 토대로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입양대상 아동에게 더 적합한 가정이 다른 입양기관에 있을 수 있으므로 ‘입양과 아동법 등록체계(The Adoption and Children Act Register)’을 통해 입양기관 간에 입양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공공 입양기관의 결정권자는 아동이 입양에 적격하다고 판단한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 입양부모도 결연할 아동 정해져 있지 않은 한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사업을 모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므로 입양기관 간에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 기관이 접수한 입양대상 아동과 입양을 신청 가정 안에서 결연하려다 보니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 입양가정을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성가정입양원에서와 같이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연을 결정하는 일이 아무런 경제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법원에 가기 전에 아동의 결연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 결정권자의 경우에도 입양패널의 의견을 들을 뿐 아니라 지정된 기관자문관(agency adviser)과 의료자문관(medical adviser)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와 좀 더 객관적인 결연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개선 필요사항

- 첫째,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엄격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교육을 통해 예비 입양가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법원 허가는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아동의 결연은 아동의 평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므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와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결연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3. 입양 후 실천 개선방안

#### 1) 사후서비스

입양가정이 법원허가를 받고 입양을 완료했다고 해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입양부모는 종종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입양아동도 성장하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므로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성장하게 상담서비스와 지지,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사후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우리나라 입양가정 사후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후서비스는 입양과 동시에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입양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담당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후서비스는 매년 중앙입양원이 위탁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분배해 입양기관이나 입양 사후서비스기관, 입양 자조모임 등이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모두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기관마다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하다. 입양 가정과 아동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할 수 있고, 가정과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 따라서 사후서비스는 모든 입양가정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연장아동과 같이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과 동시에 사후서비스에 대한 입양가정과 아동의 욕구사정을 수행해 입양가정이 처음부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입양 사후서비스는 상담, 자문, 정보제공, 치료 서비스, 재정지원, 입양 관련 대화를 하게 돋는 서비스, 입양관계의 지속을 돋는 서비스, 친생부모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또한 모든 지방정부가 사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양 지원 서비스 자문관(Adoption Support Services Adviser)을 지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역할은 1) 입양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2) 지방정부의 다른 직원에게 입양지원서비스와 사후서비스에 대한 욕구사정, 서비스 접근성, 바람직한 실천방법, 서비스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 기관 내/기관 간 공동작업의 지원·촉진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지원하고, 3) 다른 지방정부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지원(예: 입양가족이 이사할 때 서비스 지원도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양지원서비스를 2개의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제공할 때 협력하고 연계하는 역할)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입양아동의 교육을 위해 옹호해야 하는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야 할 때 촉진자 역할을 하고, 포괄적인 입양지원 서비스 전달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미국의 경우 '펜실베이니아주 입양과 영구계획 네트워크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SWAN)'는 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과 펜실베이니아 입양거래소(Pennsylsania Adoption Exchange), 공공과 민간 입양기관과 조직, 권리옹호자(advocates), 판사, 법조계, 위탁가정과 입양가정이 파트너쉽을 맺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곳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사는 입양가정과 아동이 일생에 걸쳐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SWAN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는 입양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SWAN Helpline이라는 전화 상담서비스도 운영한다. SWAN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사례옹호 정보서비스 (Case Advocacy Service Information): 기관은 입양가정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 돋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의 강점과 욕구를 발견하게 돋고, 가족지원계획을 세우고, 가족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를 조정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SWAN Helpline를 이용하는 입양가정에는 담당 직원이 질문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서비스를 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의뢰하면 사정절차를 시작한다.

2. 지원 서비스 (Support Services): 입양가정도 모든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의사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치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입양부모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모임의 목록과 연락처를 제공한다. 지원서비스는 다시 1) 지지집단 (Suppprt Group), 2) 뿌리찾기와 친생가족상봉(Search and Reunion)과 3) 자원센터(Resource Center)로 구분한다.

지지집단은 입양가족과 아동에게 관계를 맺게 돋고, 서로 멘토가 되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교육과 사회적 교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지집단은 다른 사람과 입양의 성공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관은 지역마다 입양가정과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입양인에게는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의료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친생부모도 점점 더 자신이 입양 보낸 친생자녀를 만나거나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는데 관심을 보이는데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뿌리 찾기와 친생가족 상봉’이라고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찾거나 친생부모와 상봉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기관은 뿌리 찾기나 친생가족 상봉을 원하는 사람에게 SWAN Warmline이라는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SWAN에서는 또한 입양이슈에 관한 책과 잡지, 비디오 등을 지역 도서관에 배포하고, 도서관명단을 만들어 입양가정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3. 휴식정보 서비스(Respite Service Information): 휴식은 입양부모가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여 아동을 더 잘 보살필 수 있게 한다. 휴식은 입양가정의 집 안에서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휴식 서비스는 특수 욕구가 있는 아동의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

을 개발하여 해당 가족을 지원한다. 이는 입양가정과 아동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호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한다. 전화서비스를 통해 입양가정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사정절차를 시작한다(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and Permanency Network 홈페이지, 2017).

그 밖에 미국의 주요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특수욕구 입양아동을 위한 재정지원, 아동발달 단계별 적응을 위한 입양가족 지원, 생애에 관한 책(Life story book) 만들기, 안정적인 배치를 위한 지원, 가족역량 강화와 지지를 통한 아동의 안전 유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의 소개와 연계, 파양을 방지하고 입양의 완료를 돋기, 사후서비스 욕구 조사, 친생부모와의 관계 지속하기, 위기 상황에 처한 입양가족 지원, 인종과 문화가 다른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족 지원, 사후입양서비스 프로그램의 평가, 사후입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둘째, 입양은 선한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에 분포한 입양가족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입양부모는 선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인식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만든다. 훌륭한 사람이 입양했으니 알아서 잘 키울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입양가정이 생애발달 과제를 인식하고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사후서비스로 재정지원을 할 때는 아동의 가정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자산조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 가정에만 지원하고 정기적인 사정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또한 위탁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전환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수한 사례로 지정되지 않는 한 2년간만 지원한다. 또한 재정지원이 입양부모에 대한 단순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미국에서도 재정지원은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과 같이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만 주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전문적인 사후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나 오히려 재정지원은 대부분 건강한 신생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어 위탁과 입양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은비 사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에 대한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국내입양가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입양가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후서비스를 하루빨리 개발하고 미국 웨슬리언대학에서처럼 전화상담서비스를 구축하여 입양가족이면 누구라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전국에 분포해 있는 입양가정의 사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적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개선 필요사항

- 첫째, 사후서비스는 입양과 동시에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입양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담당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 둘째, 입양은 선한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에 분포한 입양가족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4. 입양기관 실무자를 위한 실천 개선방안

### 1) 입양기관 실무자 자격과 보수교육

앞서도 언급했듯이 입양사업은 입양 삼자 즉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입양 실무자는 입양 삼자의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각각 존중하면서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게 실천해야 하므로 매우 수준 높은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질이 향상하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전문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 입양기관 실무자 자격과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입양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의 입양실천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입양기관 실무자의 현재 자격기준은 입양실천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입양실무에 대한 이해나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얼마든지 입양기관 실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은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가정입양원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했고, 실무자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 기관장조차도 입양실천의 윤리적인 원칙은 물론 선행 연구결과와 선진외국에서 오랜 입양 실천경험을 통해 입증한 ‘최선의 실천(best practice)’과는 무관하게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입양실천이 진정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으로 발전하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입양실천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나라 입양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실천 내용이 과연 입양 실천 원칙에 부합하고 ‘최선의 입양실천’을 토대로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가 입양기관이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기준을 준수하는지

인증하도록 공인한 유일한 기구인 인증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은 입양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을 직급이나 역할에 따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 슈퍼바이저는 아동과 가족서비스,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인가받은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심리학 등 관련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야 한다. 그 외 실무자도 석사학위가 있거나 입양관련 경험이 있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영국과 스웨덴, 미국 모두 가정조사서와 아동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입양실천에서 가정조사서와 아동보고서의 작성이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 **둘째,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 개시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입양실무자 보수교육은 입양 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양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천원칙이나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가정입양원 실무자의 면접 결과 기관의 신입 직원으로 입양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은비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비 입양가정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해야 하는 입양 실무자가 입양실천의 원칙은 물론 입양이슈나 입양아동의 욕구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예비 입양가정의 준비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양실천의 전문성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입양기관 실무자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입양기관 실무자가 교육과 훈련 없이 입양업무를 시작하는 것과 부실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입양가정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 개시 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입양실천 원칙, 입양삼자의 욕구와 문제, 입양이슈 등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내용도 훨씬 더 강화하고, 교육과 훈련도 입양기관 실무자나 기관장이 아니라 입양관련 연구결과와 입증된 ‘최선의 실천’을 기반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증위원회에서는 입양기관의 직원이 교육·훈련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는데 일반직원과 신입직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내용을 구분해서 제시한다.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어디서 어떤 교육·훈련을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받았고, 입양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지 등을 직원이 직접 서술해서 제출하게 한다. 또한 기관방문을 통해 기관에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등을 증빙하는 교육·훈련 관련 파일을 검토하고, 신입과 일반직원교육과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그 외에도 최근에 고용한 직원과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직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원, 일반직원을 직접 면접해서 교육·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한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가정조사서와 아동보고서의 작성, 상담서비스, 입양부모의 준비, 사후서비스 등 임상적 기술과

판단의 적용이 필요한 입양업무를 맡은 신입직원의 경우 반드시 1. 헤이그협약의 의무사항과 규칙, 2. 아동의 이민과 관련된 규정, 3. 직원이 담당할 국가의 입양법, 4. 관련 주정부 법, 5. 국제 입양의 윤리적 원칙과 아동매매의 금지, 6. 기관과 개인의 목표, 윤리적·전문적 지침, 기관의 책임 성과 정책, 절차, 7. 기관이나 직원이 상대하는 인구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그 밖에도 기관은 신입 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뿐 아니라 1. 아동의 국가에서 아동에게 입양가정이 필요하게 한 요인, 2. 원가족과 관련한 아동의 분리와 애도, 상실 경험, 3. 애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겪는 심리적 이슈, 5. 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6. 국제입양 아동의 결과와 다른 보호서비스보다 영구적 가정배치가 좋은 점, 7. 담당하는 국가의 아동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의료적, 심리적 문제, 8. 입양가정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9. 인종, 종교, 문화, 국제입양의 영향 등을 포함한 문화변용과 동화와 관련된 이슈, 10. 입양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발달 등의 주제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신입직원이 최신 입양실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세미나와 콘퍼런스, 온라인 교육 등에 참여하여 적어도 2년마다 30시간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이렇게 인증위원회가 이렇게 신입직원의 철저한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것은 입양기관 실무자가 입양가정과 아동을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그만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개선 필요사항

- 첫째, 입양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관의 입양실천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 둘째, 입양기관 실무자의 업무 개시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 <부 록>

SAFE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Consortium for Children, 2005; Consortium for Children 홈페이지, 2017).

1. 정보수집 도구: 정보수집 도구는 예비 입양가족이 좀 더 진실하게 응답하게 하고, 자기 개방을 더 잘 하게 돋고, 중요한 이슈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정보수집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질문방법을 최적화하고, 응답을 기억하게 하고, 가족과 실무자의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SAFE는 가정조사 면접을 지원하는 통일된 정보수집 도구를 3개 제공하는데, 이들 도구는 실무자가 면접을 좀 더 집중해서 하게 돋는다. 첫째, 질문지 I(Questionnaire I)은 주로 기존 가정조사서에서 자서전 등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질문은 “당신을 주로 양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와 같은 폐쇄형 질문과 모든 가능한 선택항목(예: 어머니와 아버지 등)을 같이 제시하면서 이루어진다.<sup>13)</sup> 둘째, 질문지 II(Questionnaire II)은 가족기능의 중요한 영역을 일제히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이 질문지는 매우 예민한 정보를 다루므로 예비 입양부모는 실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다. 이 질문지는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으므로 실무자 자신도 과거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견 무의식적으로 견 피했던 감정적인 이슈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질문의 예로는 “당신이나 배우자는 다음 중 어떤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모든 것에 표시해 주세요.)”가 있고, 보기에는 “투옥, 전투, 파산, 자연유산, 불임,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부상이나 질병, 정신과 입원이나 외래 진료, 직장 해고, 자녀나 배우자와 사망, 입양 보낸 경험, 자녀의 유괴나 납치, 접근금지 명령, 가정폭력”이 있고, 각 항목마다 자신과 배우자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면 표시하는 박스가 있다.<sup>14)</sup> 셋째, SAFE 추천서(SAFE Reference Letter)는 예비 입양부모가 지정한 추천인에게 발송한다. 추천서도 질문지 I과 질문지 II와 비슷한 형식을 따르고 똑같은 질문도 많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작성하기 괴롭고 긴 추천서를 쓰는 대신 기관에 가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2. 구조화된 분석: SAFE에서는 기존 연구결과 입양이나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육을 하는 데 필요한 심리사회적 요인 70개를 밝혀냈다.

심리사회적 목록(Psychosocial Inventory)은 SAFE 안내 지침(SAFE Desk Guide)과 함께 예비 입양가정의 가족기능, 강점과 한계를 평가하려고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구조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심리사회적 목록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9개 영역 즉, 1) 이력(History), 2)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3) 부부 관계(Marital/Domestic Partner Relationship), 4) 가족과 함께 살거나 자주 와 있는 사람(Others living or frequently in the home), 5) 확대 가족관계

13) 다른 질문의 예: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선택항목의 예: 관계가 없었음, 다정함, 애정어림, 내가 어머니를 보살핌, 학대했음, 따듯함 등 기타를 포함하여 선택 항목이 총 28개임

14) 다른 질문의 예: “아래에 제시한 이슈가 당신이나 배우자에게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보기의 예: 도박, 돈 관리, 음식, 성, 분노조절, 흡연, 일, 교육, 포르노

(Extended Family Relationships), 6) 물리적/사회적 환경(Physical/Social Environment), 7) 일반적 양육(General Parenting), 8) 특수한 양육(Specialized Parenting), 9) 입양이슈(Adoption Issues)로 뮤어서 본다. 심리사회적 목록의 각 요인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다.

SAFE 안내 지침은 각 심리사회적 요인을 정의하고 실무자가 가장 적절한 점수를 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요인을 평가하다 보면 실무자는 가족에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이슈가 우려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심리사회적 목록의 이력 부분의 예

A. 이력		사람 1					사람 2				
A-1	아동기 가족 적응력	1	2	3	4	5	1	2	3	4	5
A-2	아동기 가족 응집력	1	2	3	4	5	1	2	3	4	5
A-3	아동기 결핍/정신적 충격 이력	1	2	3	4	5	1	2	3	4	5
A-4	아동기 피해 이력	1	2	3	4	5	1	2	3	4	5
A-5	성인기 피해/정신적 충격 이력	1	2	3	4	5	1	2	3	4	5
A-6	아동학대/방임 이력	1	2	3	4	5	1	2	3	4	5
A-7	알코올/약물 사용 이력	1	2	3	4	5	1	2	3	4	5
A-8	범죄/혐의/폭력 이력	1	2	3	4	5	1	2	3	4	5
A-9	정신과 이력	1	2	3	4	5	1	2	3	4	5
A-10	직업 이력	1	2	3	4	5	1	2	3	4	5
A-11	결혼/동거 이력	1	2	3	4	5	1	2	3	4	5
전체 평가		1	2	3	4	5	1	2	3	4	5

#### A-7 알콜/약물 사용 이력에 관한 안내지침 평가의 예

A-7	알코올/약물 사용 이력
알코올,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처방약, 불법 약물 사용의 이력을 의미한다.	
점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항 없음</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술을 마신 적이 없거나 가끔, 적당한 양의 음주 이력이 있음(한두 잔)</li> <li>불법 마약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음</li> <li>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나 처방약을 남용한 적이 없음</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당한 양의 정기적인 음주 이력 있음(한두 잔)</li> <li>"좀 더 순한" 불법 마약을 짧은 기간 실험삼아 사용한 이력 있음 (예) 흡연했거나 한두 번 마리화나를 흡입했음</li> <li>가끔 불필요하거나 처방받지 않아도 되는 약/처방약(배우자가 처방받은 통증약) 사용 이력 있음.</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음주(3잔 이상) (예) 주말에 운동경기를 보거나 친구들과 나가서 과도하게 술을 마심</li> <li>순한 불법 마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이력 있음 (예) 오랜 기간 흡연하거나 마리화나를 흡입했음</li> <li>자주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거나 불필요한 약/처방약을 사용한 이력 있음.</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코올 의존이나 중독 이력 있음 (예) 심각한/만성적 알코올 중독</li> <li>"센" 불법 마약 사용/불법 마약 중독 (예) 헤로인, 코카인이나 히로뽕 등을 사용했음)</li> <li>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거나 불필요한 약/처방약을 정기적으로 남용(매주 여러 번) (예)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처방약에 대한 만성적 중독 상태</li> </ul>

#### 3. 공통 형식을 갖춘 가정조사서 (Pre-Formatted Home Study Report)

SAFE는 모든 실무자가 가정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공통모델을 제공한다. 가정조사서 첫 부분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리사회적 평가 내용을 포함하는데, 각 심리사회적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와 그것에 기초한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한다. 심리사회적 평가의 결론 부분(Psychosocial Evaluation Conclusions)에서는 심리사회적 목록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비 입양가정의 입양아동 양육 능력과 준비정도를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예비 입양가족이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동을 적는 부분(The Children Family Can Best Serve Section)이 있는데 이곳에 실무자와 예비 입양가족이 생각하기에 가족이 가장 잘 도울 수 있고, 가족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아동의 욕구와 특징의 범위를 적는다.

점점 더 많은 미국 주 정부는 위탁가정과 입양 예비가정 평가를 위해 SAFE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SAFE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아동협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실무자는 이를 하루 6.5시간씩(비용: \$290), 슈퍼바이저는 4시간 훈련(비용: \$150)을 받아야 한다. 슈퍼바이저 훈련은 일반 실무자 훈련을 받은 후에만 받을 수 있다(Consortium for Children 홈페이지, 2017).

## 2.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서 민간중심성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중심성은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등 국가의 개입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에서도 그 사정이 다르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원가정 복귀(family reunification)와 더불어 영구히 가정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permanency plan)의 하나인 입양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함과 그 운용의 부실함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입양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의 문제도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를 문제의 많은 부분은 아동학대사례의 발굴부터 대응, 사후처리과정,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절차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 미비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입양절차의 경우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가 입양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입양대상 아동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 및 산하 보호시설의 배타적인 보호와 관리 아래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민간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이를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의 모니터링 및 개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민간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부처도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을 입양절차상 공적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입양제도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는 입양관련 업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에 직접 수행하거나, 이들이 설립한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아래에는 이러한 전제 하에 우리나라 입양제도를 입양 전, 입양과정, 그리고 입양 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부모 및 아동, 그리고 입양부모 등 입양의 주요 주체들에게 요구되거나 필요로 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sup>15)</sup>.

15) 아래 글에는 이들 주요 주체들 외에 (민간) 입양시설 및 기관에게 요구되거나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입양업무가 국가와 지자체, 혹은 그들이 설립한 전문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 입양기관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축소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입양업무가 거의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들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1. 입양 전 단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0조에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결국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하는 (혹은 당하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의 아동이 이러한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같은 조에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양을 이들 특수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 혹은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입양의 적절성과, 제도적 완성도, 운영의 치밀함 등을 논하기에 앞서 입양과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위기상황에 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을 하는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입양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하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입양 전단계 제도개선방안은 입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제안보다는, 입양까지 이르지 않도록 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위한 제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이 입양에 이르는 과정에는 사고에 의한 생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빈곤,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양육 준비의 부족, 가정내 양육에 필요한 지지체계 및 자원의 부재 등 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가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이 어느 누구도 ‘특수한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인권 차원의 보편적 지원제도의 도입과 확충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보편적인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보호권의 보장을 위해 의료, 교육, 돌봄, 여가, 안전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공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수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보급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보편적 지원제도의 구축 및 개선과 더불어 빈곤가구, 미혼모 가구, 조손가구 등 상대적으로 ‘특별한 위기상황’에 처할 잠재적 위기도가 높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로, 국내외입양아동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혼모(2015년 현재 국내입양기준 90.5%; 해외입양기준 95.7%)<sup>16)</sup>인 점을 고려하면 미혼모 양육에 대한 낙인 등 사회적 인식의 개선, 미혼모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육아용품 및 보육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현물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이들 미혼모들이 아동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원가정 내 양육을 포기할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개입방안도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수준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원가정내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특수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가 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현금 및 현물 지원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정보, 아동을 가정에서 아동보호체계로 보내는 과정과 그 결과 (consequence)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아동을 아동보호체계로 보내는 결정이 가용한 모든 정보와 상황을 고려한 판단(informed decision)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개선 필요사항

#### 보편적 부모와 아동

- 아동수당 등 아동인권보장 차원의 보편적 지원제도 도입
-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제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보육 공공성 제고
- 공공 방과 후 돌봄의 확충 및 질 개선
- 아동의 쉴 권리 확보를 위한 도서관, 공연장, 공원, 녹지, 운동장, 체육시설, 수영장 등  
여가문화체육 인프라의 확충
- 보편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일반적 위기아동

- 미혼모 가구 등 가구형태에 따른 낙인, 차별과 배제를 포함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16) 중앙입양원, 2015. 국내입양통계.

- 위기 가구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의 확대

####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와 아동

- 입양 고려 생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다양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 입양대기아동의 생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아동을 양육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현금 및 현물 지원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정보, 아동을 가정에서  
아동보호체계로 보내는 과정과 그 결과(consequence)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
- 아동의 생부모 및 예비 양부모에 입양절차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 2) 아동 및 생부모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을 고려하는 ‘특별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양대기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 다른 차원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입양특례법에 규정된 입양숙려기간 동안 생부모대상 개입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입양 숙려기간이 아동을 입양절차에 양도하기 전 최종적인 숙의단계임을 고려하여 생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 정보제공, 지지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대기아동의 무분별한 시설 수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입양대상아동 확인 후에 관례적으로 아동수용보호의뢰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입양대기 아동이 생부모와 결별하여 필요 이상으로 조기 시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입양대기아동의 시설 수용이 입양대상아동 확인의 전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입양부모의 접근성 확보 등 입양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례적으로 조기 시설입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입양과정 내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미혼모자생활시설의 확충 등 필요 인프라의 구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입양대기아동의 입양이 현실화될 때까지 최대한 생부모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상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입양의 법률적 효력, 입양 전후 생부모의 권리, 입양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입양대상아동 및 생부모 대상교육

- 입양숙련기간 동안 생부모 대상 개입 프로그램 강화
- 아동양육 정보 제공
- 입양대기아동의 생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입양의 법률적 효력, 생부모의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
- 입양대기아동의 시설 수용 제한
- 입양대기아동이 입양결연시까지 생부모와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 및 필요한 지원(거주시설(예: 미혼모자시설) 등) 제공
- 아동수용보호의뢰(와 이에 따른 입양대기아동의 시설 수용)가 입양대상아동 확인 의뢰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함

### 3) 예비 양부모

예비 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 관리와 사전 교육 강화는 입양 전단계에 예비 양부모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예비 양부모 자격 요건의 관리는 이번 대구 및 포천의 학대사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포천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입양부모가 입양특례법상으로는 양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간의 동의에 의한 민법상의 입양으로 간주되어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임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입양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포천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민법상의 입양이라 할지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의 경우는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예비 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의 강화 또한 입양 전단계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는 크게 두 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가 교육시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형식의 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제10조 제3항)에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교육의 형식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 입양기관은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정도의 예비 양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영국의 총9회에 걸쳐 27시간, 스웨덴의 총 7회에 걸쳐 21시간, 미국의 총 27–30시간에 비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1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17)</sup>. 현행 예비 입양부모교육은 결과적으로 예비 입양교육을 입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이에 근거한 양육교육에 이르기에

17) 미국의 경우 영아 입양에 한해 총2회 1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변미희, 안재진, 강지현 (2015). 예비양부모 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앙입양원.

는 지나치게 짧은 1회성 교육으로 이어지는 요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입양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의 운영은 입양특례법(제1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 교육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사의 선정, 수강생의 규모 등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입양교육의 내용과 운영상황에 대한 공적 개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입양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입양교육의 내용과 운영형식에 대한 표준적인 안을 만들고, 강사의 경우도 전문강사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예비 양부모 교육

- 예비 입양부모 예비 양부모 자격요건 강화
- 아동에 대한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으로 일원화하여 입양부모 자격요건 검증의 사각지대 해소
- 예비 양부모 부모교육 강화
- 예비 양부모 부모교육 시간 현실화 및 내용적 강화
- 예비 양부모 교육에 대한 공공(중앙입양원)의 적극적 개입 및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2. 입양/결연과정

아동이 입양을 위한 준비과정인 입양대상아동확인을 거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된 시점부터 실질적인 입양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예비양부모와 아동 사이의 결연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입양대상아동의 보호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입양결연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이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관리감독을 통해 입양 및 결연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표는 궁극적으로 입양업무 전반을 공공업무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입양의 공공업무화 방안은 몇 가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입양원의 성격을 입양업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입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전문인력의 충원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내에 입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하고 입양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해당 지자체내의 입양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입양과정 전반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는 현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입양 및 결연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책임성의 강화는 입양기관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업무와 대한 관련 규정이나 표준 매뉴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입양을 공공업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의 형태로라도 입양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입양업무를 담당하기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입양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입양심사를 통한 입양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관련 전문성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심사 전문 법관이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전문 법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입양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일상적 협업을 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공공입양기관 시범운영 및 확대
-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입양의 공공업무화 계획 개발 및 시행
- 중앙입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격 재정의를 통해 입양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가 입양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인프라의 지원
- 입양 심사 및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전문성 강화
- 입양전문 법관, 조사관 제도 신설 및 운영
- 입양전문 법관 및 조사관 양성과정 운영
- 입양심사 과정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와 법원의 협업관계 구조화

## 2) 아동 및 생부모: 예비 양부모

입양대상아동확인을 거쳐 입양대상아동이 된 경우에도 생부모가 원하는 경우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생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한다.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결연 과정을 통해 양부모의 가정에 입양되기까지 생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하며, 그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양대상아동의 입장에서 입양결연 과정에서 최대한 생부모와 동거할 수 있는 시설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모(부)자보호시설의 확충을 통해 원하는 경우 입양대상아동이 생부모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예비 양부모에 대해서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비 양부모는 결연과정에서 입양대상아동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만큼 해당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받아야 하며, 이 시기에 아동과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 및 생부모, 예비양부모 공적개입

#### 아동 및 생부모

- 입양 및 결연과정에 친생부모의 의견 반영통로 보장
- 입양 및 결연과정 동안 입양대상아동과 생부모의 동거를 보장할 수 있는 모(부)자보호시설 확충

#### 예비 양부모

-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

## 3. 입양 후

아동의 입양이 완료된 후에는 입양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입양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공적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입양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의 수준, 그리고 공개의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양아동이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상호간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작동

### 공적 사례관리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 아동과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아동 및 양부모

- 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 중심의 지원 및 사례관리
-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 3.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

#### 1.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조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 1) 아동학대 신고 상호 통보 의무화

은비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을 당시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못하였다. 3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나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사건 통보가 됐을리 없고, 실제 통화기록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어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했는지 조차 경찰은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가 되어, 상담원이 함께 출동하여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 서비스 개입을 했다면 몇 달 후 은비가 심정지 상태로 다시 응급실을 가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의 검토하여 작성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2014.9)>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접수 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응급아동학대의 경우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응급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은비의 경우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아동학대신고로 보았어도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동행을 요청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 유선으로 협의해야 하지만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00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사건을 오인신고로 종결하여 버렸다. 오인·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경찰은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확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에 특화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하지만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일원화 된 이후 경찰에 의한 출동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취지에 맞춰 서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상시 관계에 따라 공조 수준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상호 통보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특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동행출동이 더욱 활성화(2016년 기준 41.8%)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출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라는 항목을 ‘요청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특정 기

간을 두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간에 신고 접수 통보가 누락되는 건은 없는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신고 상호 통보 의무화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상호 통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동행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의 문구 개정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

#### 2) 현장출동 상황에서 명확한 역할 정립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은비가 심정지 상태로 온 후 병원 의사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였다. 하지만 현장 조사 단계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조사해야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은비 건과 같이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고 범죄 혐의가 짙은 사안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 분위기 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상대적으로 끌려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떨 때는 따로, 또 어떨 때는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업무 수행지침에는 현장출동에 대한 프로세스 안내와 해야 할 사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조사”한다고만 나와 있고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조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정확히 누구의 역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결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업무를 배분하다보니 상호간의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다른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아동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대 판정을 줄곧 미루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

### 현장출동 상황에서 명확한 역할 정립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현장출동 상황에서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 3) 사례관리 과정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찰의 수사를 받은 관계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청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주요한 수사 정보는 경찰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 정보는 함부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와 개인정보수집 권한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분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적극 활용하거나 평소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적 역량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대한 학대사건의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회의를 정례화하여 기본적인 사건의 진행정보를 공유하고 개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협행법 테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학대전담경찰관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016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 점검과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할 학대전담경찰관의 수를 1,05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년 3월 기준 303명).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 522명보다 많은 것이다. 하지만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이 가정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현장조사 및 사건 모니터링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과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사팀에 비해 학대전담경찰관의 직급이 낮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충분한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한다. 따라서 학대전담경찰관이 경찰 내 수사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에서 정보공유와 상호 조율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제도 보완을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

- 사건이 중대하거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기타 제반 이유를 포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공동 사례회의를 의무적으로 혹은 자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인 정보 교환과 사건 처리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에 한계가 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학대전담경찰관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이에서 정보공유와 상호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은비의 사망사건을 들이켜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준수되어야 할 많은 절차들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신고 과정에서 대구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대명파출소가 최초 접수)로 신고 된 시각이나 경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기록이 없어서 제대로 통보가 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예비양부모 지인 의사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의료인의 경우 주치의의 소견자료를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결국 오인신고로 현장 종결했고, 이 사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상흔 확인과 학대 증거 수집은 현장 출동 당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추후에라도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또한 막내의 이마와 턱에 긁히거나 맞은 듯한 상흔과 눈에 50원 동전 크기의 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후 남은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15일 현장조사 이후 가정방문은 8월 29일 언론의 관심이 나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를 통해 피해아동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본 등 여타 행정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전에 은비의 경우 입양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법원에 입양허가 판결이 있기 전 적극적으로 학대 의심 여부를 알려 입양허가 판결이 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진 않았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인식, 현장에서 상호간 역할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경찰과 상담원이 업무 수행지침을 충분히 익혀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찰 양성 과정에서 아동학대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커리큘럼 반영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경찰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점검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찰 양성 과정에서 아동학대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과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 2. 아동학대 관련자의 교육 강화

### 1) 아동학대 대응 관련 직군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은비가 1차 입원(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 당시 담당 주치의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였고 병원 내 학대위원회에 신고하여 총무과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어 신고를 받은 대구남부경찰서에서는 지구대 포함하여 10여명의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의견만을 듣고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대의심 신고에 대해 조사를 종결시켰다.

학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학대에 대한 지식과 민감성을 지니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이다. 특히 신고가 112로 통합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출동하는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또는 학대전담경찰관에게 학대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현장에 출동하는지 알기 어렵다. 경찰이 학대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사건은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으로 함께 대응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00시간의 전문상담원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대응 및 개입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경찰, 검사, 판사 등은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학대예방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관련 직종 아동학대 직무교육 강화

- 경찰, 검찰, 판사 등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직종이지만 학대받은 아동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종이기에 직무교육 시 업무수행 지침교육(학대민감도를 높이고, 학대사건대응 지침 숙련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 2)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학대예방교육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직원이 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 이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가 많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최소한 병원 응급실이나 소아과, 소아청소년정신과 등) 응급 혹은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의사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군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하고, 학대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된 것은 아동학대특례법 개정(2016.5.29.)에 따른다. 시행은 2017.5.30.).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 업무를 현장출동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학대예방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시 지원을 하는 업무로 규정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는 연 1회 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사건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내실있는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며 얻은 교훈(예를 들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체벌에 대한 관용적

인 태도가 심각한 학대행위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평판과 아동학대사건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을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 실시 여부 모니터링

- 신고의무자 대상 학대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이수 여부 모니터링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다른 직군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 확충

### 1) 상담원 확충과 소진 예방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710.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19,214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29,669건으로 54%나 신고접수가 급증하였다. 신고접수 증가에 따라 적정인원을 환산하면 1,094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2015년 기준 배치 상담원의 수는 522명이다.

또한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아동 수는 한 곳당 평균 203,467명이며, 최대이동거리는 평균 57km, 최대이동시간은 평균 72분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처리해야 할 반경이 무척 넓은 것이다.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상담원 1인당 15건의 사례를 맡는 것이 적당하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하루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4.73건이었고, 가장 많은 평균 건수를 기록한 안산의 경우 11.71건을 기록했다. 상담원 1인당 약 2만4,998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고,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1,860명)의 10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은비와 같은 사례 하나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조차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아동을 학대피해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가 더 늘어야 한다. 2017년 1월 기준 전국에 60개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최소 100개로 증설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드림스타트 체계처럼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담원의 숫자가 확충되어야 한다.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수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간 사례수를 토대로 적정 상담원수를 산출하여 필요 수만큼 상담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상담원 소진을 줄이고, 상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담원 이직률을 낮춰 상담원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소진된 상태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쌓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례에 개입하여 은비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상담원 수 확충과 처우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 시군구별로 최소 1개씩 설치하고, 기관 별 연간 사례수를 토대로 적정 상담원수를 산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원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아동학대 예방 예산 확충

2015년 정부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를 10년 만에 국가사무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예방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나온다. 그 결과 2017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편성된 중앙정부 예산 266억 원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183억 원, 복권기금에서 42억 원,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41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 총 600억 원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쓰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쉽지 않고, 기금 규모를 변경하려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개정이 필요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도 2014년 14건에서 2016년 36건으로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2015년 252억 원에서 2016년에는 이보다 줄은 185억 원이었다. 2017년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266억 원에

불과하다. 신고건수가 약 1.7배 늘었지만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 아동보호 예산 확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복지부 일반 회계예산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 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 1) 체벌금지를 통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은비의 비극적인 죽음의 근본 원인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를 때려서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 학대 가해자인 백씨는 법정에서 “나는 단순 훈육을 위해서 체벌한 것 외에는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학대 가해 부모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주장이다. 결국 심각한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예방교육 시 아동복지법 제5조2항의 내용(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반드시 알리고, 훈육차원의 체벌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현재 신체적인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어떠한 폭력(정신적 폭력 포함)도 성인에게 허용되지 않듯이, 아이라는 이유로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훈육을 빙자한 체벌 금지

- 학대 예방 교육 때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의 책무 내용을 교육하여 훈육 차원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전면적인 체벌금지를 해야 한다.

## 2)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아동보호 시스템 개편

아동학대 사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책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정부이다.

영국과 미국의 선진 사례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1년 빅토리아 클림비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이후 클림비의 사망을 막을 기회는 없었는지, 현재 아동보호 체계의 구멍은 어디인지와 같은 질문을 두고 3년 간 약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펼쳐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2016년 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아동 보호법(Protect Our Kids Act)'을 근거로 상·하원 의원, 현직 교수, 관련 단체 종사자, 판사 등 12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발간한 보고서이다. 위원회 운영비로만 연간 약 22억 원을 투자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정책제언은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죽음을 꼼꼼하게 되짚을 것'이었다. 아이들의 죽음을 복기하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이서현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사무로 있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10년 만에 국가사무로 전환하였다. 이번 <대구·포천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도 면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다. 향후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대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진상조사위원회 설립

-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현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되짚어 보고 제도개선안을 찾아내는 국가 차원의 조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4. 친부모 양육지원

은비 엄마는 은비를 17살에 낳아 나흘로 생계를 꾸리면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느라 은비 엄마는 은비를 어쩔 수 없이 24시간 돌봐주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됐다. 24시간 보육료가 벅차서 은비가 17개월 될 무렵 경기도에 위치한 보육원(고아원)에 맡김으로 인해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에 해소가 되었다. 고아원에서는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비엄마도 외조모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은비가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것이 마음 아파했을 때 주위에서 입양을 보내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서 입양을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되고, 성가정입양원에서 상담을 할 때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비는 1차 입양전제위탁가정에서 3개월 만에 양모는 은비의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 식탐 등 더 이상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가정입양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성가정입양원은 약 1개월 만에 2차 대구입양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게 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정도 걸렸고, 그 사이에 은비는 학대로 놔사에 빠지게 됐다. 은비 생모는 은비의 놀사를 알게 되어 입양을 취소하고 싶어서 성가정입양원에 상담 했을 때 은비의 병원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은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망설이게 됐다고 한다.

### 개선 필요사항

- 시설보호 이전에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하도록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담 상담 창구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상담 담당자는 부처간 또는 지역내 동원이 가능한 모든 보육지원책을 숙지하여 위기 가정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
-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설 보육이나 입양보다 가정위탁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
- 친생부모에 대한 사전 상담을 입양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원가정양육시 지원 정보와, 입양외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친생부모가 입양을 의뢰하는 것만으로 입양이 개시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심사(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를 거쳐 입양이 개시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 친생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입양철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양상담시 친생부모에게 입양철회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구두로 설명해야하며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입양동의 철회시 입양 기관이나 양부모로부터 그동안 아동 보호에 들여간 비용에 대해 지급을 요구받지 않는다 는 점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 2. 포천 A양 사례를 보면서 원가족 보호 및 입양절차 개선사항

포천 A양 친모는 남편과 협의 이혼 한 후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A양 친모는 친정을 비롯해 주거지를 떠돌아 다녀야 됐고, 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되었지만 보증금 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늦게까지 히드렛일을 해가며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웃에 살던 양모는 A양의 친모가 일에서 늦게 올 때 작은 애 A양을 자주 돌봐 주었고, A양 또한 양모를 잘 따랐다. 두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결국에는 A양이 잘 따르는 양모에게 입양(민간)을 보내게 된다.

### 개선 필요사항

- 친부로부터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 할 경우 오롯이 나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어떤 가정환경에서든 아동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아동이 친부모와 분리가 되었을 때 오히려 복지 지원이 원활한 현행 아동복지지원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원가족이 분리 되지 않고 원가족 내의 아동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가정의 아동이든 동등한 아동수당 제도가 필요하다.
-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위 사례처럼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못 들어가는 저소득 한부모들이 많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아동인권 보장에 구멍이 많은 민법상 입양 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입양특례법으로 통합하여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이혼신고하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때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 안내 배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친부모 양육지원 제도개선 제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제27조).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고,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에서 “입양을 사실상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로 지적하면서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은비엄마처럼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온갖 편견과 빙곤에 시달린다. 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혼자 낳으면 학생미혼모는 교육을 더 이상 받기 힘들고, 직장을 다니던 미혼모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원가족과도 단절해야만 하는 미혼모·부가 많다.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미혼모·부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2%인 146만원이 되어야만 월 12만원씩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입양부모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만16세까지 월16만원(중증장애아동 월62만7천원/만18세까지)지원과 만18세까지 의료비가 무료이며 심리상담비용까지 지원받는다. 아동이 어느 가정에서 키워지느냐에 따라 양육수당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혼모·부와 그 아이들을 위해 혼자서도 양육·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

- 아동양육환경은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양육과정에서의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등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정착되어야 한다.

미혼모·부가 되면 무섭고, 두렵고, 혼란한 마음을 갖게 된다. 특히 10대 미혼모·부는 정서적 심리가 더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10대라고 해서 무조건 낙태 또는 입양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미흡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10대 미혼모·부도 학업을 충실히 하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상담 창구(Hot Line)을 개설·홍보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는 매칭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임산부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임산부가 무료로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제도를 확보해야한다.
-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산모수첩에 양육 미혼모·부자 지원서비스 및 미혼모·부 당사자 조직 안내하고, 산전 진료부터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홍보한다. 예를 들어 국민 행복카드 발급 안내, 주거시설안내, 양육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하여 출산을 돋는다.

201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미혼모·부의 영유아 자녀가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홀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안정, 자립교육(학업포함), 아이 돌봄서비스,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 이것을 3+1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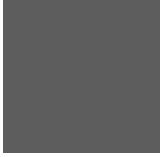
- 주거안정 : 10대 미혼모·부자가 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고자 주거임대 계약을 하자 할때 10대는 아직 미성년자임으로 임대계약을 할 수가 없어 매우 주거가 매우 불안정하다. 10 대 미혼모·부라 하더라도 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독립된 가구 구성으로 봐야 됨으로 주거를 임대 할 수 있게 제3자가 임대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교육 : 10대 미혼모·부는 학업이 중단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직업교육 및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아이 돌봄서비스 : 미혼모·부는 나홀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늦게 까지 일을 하는 직장인, 자립교육(학업)을 하는 미혼모·부는 아이 돌봄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나, 아이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 미혼모·부가 많다. 실질적인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 나홀로 양육을 하다 보니,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미혼모·부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낙태나 입양을 권유하여 결국 친생부모와 헤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을 최소화 하려면

정부 지원 뿐 아니라 성(性) 인지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흔히 미혼모는 있는데 미혼부는 없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다. 아이는 혼자서 가질 수 없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려면 원가족과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망가는 아이 아빠에게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 미혼모·부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쳐야한다. 덴마크는 15살에 아이아빠가 될 경우 아이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됨으로 덴마크 남자들은 스스로가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 비양육자인 양육 책임강화 구축

- 아이 아빠가 없는 아이는 없다. 아이를 위해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윤선 (2016). 국내 입양부모의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사후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1권2호, p345–366.
- 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인선 (1995),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안), *국민복지기획단 제3분과 전문가보고:III-21, 제2주제*.
- 변미희·안재진·강지현 (2015). 예비입양부모교육 교재 개발 연구, 중앙입양원.
- 변미희·안재진·신혜령 (2016). 입양환경 변화에 따른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입양기관 실무자 의견조사,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 이경은 (2017).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논문.
- 이숙정·유지현·박소연·김주희 (2016). 입양부모 조사방법 연구, 중앙입양원.
-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입양실무매뉴얼.
-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제1기 입양기관장 과정.
- 성가정입양원(2016). 진상조사위원회 제출자료.
-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7). 성가정입양원 실무자 개별 면담 녹취록.
- Barth, R. & Berry, M. (1988). *Adoption and disruption: Rates, risks, and response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Berman, L. & Bufford, R. (1986). *Family treatment to address loss in adoptive families*. Social Casework, pp. 3–11.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The adoption home study proces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Adoption disruption and dissolu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onsortium for Children (2005). 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SAFE).
- Costin, B, Bell, J. & Downs, W. (1991 ),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Longman.
- Crea, T., Barth, R., Chintapalli, L. & Buchanan, R. (2009a).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SAFE: Frontline responses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to practice*. Child and Youth Services Review, 31(8), 903~910.
- Crea, T., Barth, R., Chintapalli, L. & Buchanan, R. (2009b). *Structured home study evaluations: Perceived benefits of SAFE versus conventional home studies*. Adoption Quarterly, 12(2), 78~99.
- Festinger, T. (1990). Adoption disruption: *Rates and correlates*. In D. Brodzinsky & M. Schechter (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18.
- Johnston, P. (1984). *An adoptor's advocate*. Indiana: Perspectives Press.
- McRoy, R. (1999). *Special needs adoptions: Practice issue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Nelson, K. (1985). *On adoption's frontier: A study of special needs adoptive families*.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Noh, H. (1989). *Identity development in Korean adolescent adoptees: Eriksonian ego identity and racial/ethnic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published Paper.
- Schwam, J. S. & Tuskan, M. K. (1979). *The adopted child*. In J. D. Nospitz (Ed), *Basic Handbook of Child Psychiatry* (Vol. 1), 342–348.
- Smith, S., Howard, J., Garnier, P. & Ryan, S. (2006). *Where are we now? a post-ASFA examination of disruption*. Adoption Quarterly, 9(4), 19–44.
-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Social Services.
- [http://www.socialstyrelsen.se/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8299/2009-101-5\\_20091015.pdf](http://www.socialstyrelsen.se/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8299/2009-101-5_20091015.pdf)
-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Statutory guidance on adoption for local authorities, voluntary adoption agencies and adoption support agencies.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0100/adoption\\_statutory\\_guidance\\_2013.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0100/adoption_statutory_guidance_2013.pdf)

## 홈페이지

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검색, "Adopting Older Children"

<http://www.adoptionlearningpartners.org/adopting/adopting-older-children.cfm>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2017 검색 "Postplacement Adoption Casework

Practice"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adoption/postplacement/>  
Consortium for Children 홈페이지. 2017 검색.

<http://www.safehomestudy.org/SAFE/SAFE-Overview.aspx>  
Council on Accreditation 홈페이지, 2017 검색.  
<http://coanet.org/standard/pqt/>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 Permanency Network, 홈페이지, 2017 검색  
<http://www.adoptpakkids.org/AdoptiveParent.aspx>

## 신문기사

가톨릭신문 2016년 12월 4일, [대림기획]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을 찾아가다.  
문화일보 2013년 11월 19일자, 입양희망 66% '여아 선호에 남아 입양프로젝트' 진행 중.  
뉴스1 2013년 1월 26일 '아이가 버려진다', '입양특례법' 보완 재개정 목소리 높아져  
한국정책신문 2017년 1월 5일, '입양제도, 규제도 좋지만 미혼모 현실 고려해야.'  
SBS뉴스, 2015



# VI

## 부록

1. 위원회 발족 보도자료와 취지문
2. 성명서
3. 기자회견



# VI

## 부록

### 1. 위원회 발족 보도자료와 취지문

#### [보도자료 1차]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

우리는 최근 두 입양 아동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대구 사건).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 6살 입양 된 딸이 학대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암매장까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포천 사건).

2014년도 울주의 아동 학대 사망한 사건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와 정부는 대책을 세우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입니다.

법원이 입양을 결정한 아동마저도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비의 엄마는 미혼양육모로서 끝까지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우리사회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입양과정에서 입양 기관은 아동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포천학대 사망 사건 아동의 양부는 전과 10범이었습니다.

학대가능성이 있다고 '아이 낳지 말라'고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학대가능성이 있는 가정으로의 입양은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면 예방할 수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그저 입양을 선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 키우고 있는 입양부모와 그 입양아동들도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과연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입양부모의 책임과 엄정한 처벌도 촉구하겠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입양아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혀 '아동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아동기 인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할 점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9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 김삼화, 금태섭

참여단체

(아동 및 입양 인권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뿌리의집, 사)탁틴내일,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미혼모단체)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법률단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두루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 [보도자료 2차]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추진에 다시 민간이 나섰다

- 국회의원 3명과 13개 단체, 전문가들 참여 21일 발족,
  -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에 이어 두 번째 민간조사위
  - 정밀 재조사와 제도개선안 작성 보고서 발표와 제도 개선 제안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 국회 등에 입양아동인권보장법 제안할 것
- 

지난 8월과 9월 발생한 대구 입양아 학대 뇌사사건과 포천의 입양아동 살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 입양아동의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오늘 오전 10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의 정밀진상조사와 대책발표는 나오지 않는 가운데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당시에 민간이 추진했던 민간조사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이 추진에 나선 것이다.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여성가족위 김삼화, 법제사법위 금태섭 의원이 맡았으며 아동인권 및 시민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뿌리의집, 사)탁틴내일,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법률가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두루, 미혼모단체인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아동복지전문가인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으로 1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공동위원장은 "우리사회는 여전히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입양아동은 더 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범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아이들의 입양과정과 죽음 전후를 꼼꼼히 되짚고 복기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미미했던 점, 입양아동의 학대예방과 안전한 입양이 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업무를 맡았던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은 없는지, 입양과정의 허점과 근본적인 사각지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대구와 포천 서울 전주 각 도시에서 세밀한 현지조사와 법정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제도개선책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예정이며 조사에 따른 개선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양관련법에서 입양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고만 하고 실제 입양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세

우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는 학대한 양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民間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고 입양부모 교육 내용과 기간을 내실화 하여 입양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적으로 '아동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체험'은 전면 재고하고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절차를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근본적으로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지속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취지문]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원위원회를 구성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고 갖가지 대책이 나온 지 2년이 흐른 지금, 또 다시 대구와 포천의 각 가정으로 입양되어 되어 학대 받고 뇌사 및 살해된 4살, 6살 아동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온 사회가 공분했던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에 이어 또다시 입양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을 접하며 요란하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우리사회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특히 입양아 학대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양부모의 처벌로 끝이 나고 만다. 2010년 대구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3명의 아동을 입양하고 학대 살해한 사건, 2011년 인터넷으로 생후 3개월에 입양하여 학대 뇌사사망하게 한 사건, 2014년에 미국 양부에게 구타살해 당한 3살 현O 사건, 입양된 후 실종되었다가 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태O군 사건, 그리고 울산 27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입양아동의 학대 예방대책 안전한 입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2016년 또다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의 경우는 공적가입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학대가능성이 있는 부모라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입양할 부모는 학대가능성이 있다면 검증을 통해 입양을 막을 수 있고, 선량한 뜻을 지닌 보통의 입양부모들도 사전 교육과 사후지원을 통해 입양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다면 학대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두 사건을 살펴보면 입양기관과 법원 모두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철저한 교육이나 검증도 없었고, 학대정황이 있음에도 입양기관이나 이웃이 신고하지 않았고, 처음 신고 받은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사실 등 입양아동의 학대사망을 막을 수 있던 여러 지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OECD국가로서 경제만이 아니라 아동인권보장이라는 면에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입양아동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가슴아파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히고 아동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양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입양기관 중심으로 업무를 위탁하려하고 있으며 입

양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입양결정 권한이 있는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여덟 살 소녀 빅토리아가 친척의 학대로 숨졌을 때 조사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당시 의회는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후 2004년 아동법을 전면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살인 피터의 학대사망이후 다시 2008년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보완된 정책들을 제시했다. 미국도 학대로 인한 아동의 죽음을 꼼꼼히 되짚어 복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동보호정책의 출발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간에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안했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보완사항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며 기여했으나 우리사회와 정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부족하다. 특히 입양아동의 학대에 대해 우리사회의 관심이 미치지 못해 두 사건에서처럼 양부모나 입양기관은 '아동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는 등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는 아동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인권단체, 아동복지전문가,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구포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망한 아이들의 입양과정과 죽음 전후를 꼼꼼히 되짚고 복기하며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미미했던 점, 입양아동의 학대예방과 안전한 입양이 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업무를 맡았던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은 없는지, 입양과정의 허점과 근본적인 사각지대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입양아의 90%를 차지하는 미혼모 자녀들이 친모와 함께 사는 것이 왜 불가능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각 도시에서 세밀한 현지조사와 법정모니터링을 병행하며 제도개선책을 찾아 미혼모부의 자녀양육을 위한 근본적 대안 뿐 아니라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양관련 제도를 전면 재편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직접적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해 공분만 할 것이 아니라 미혼 양육모부가 입양 보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부재, 학대위험성이 있는 양부모에게 입양 보내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입양아동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후 더 이상 입양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2016. 10. 21.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원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 김삼화, 금태섭

참여단체

(아동 및 입양 인권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뿌리의집, 사)탁틴내일,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미혼모단체)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법률단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두루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 2. 성명서

### 아동 인권에 구멍 뚫린 입양법,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입양을, 미혼모에게 양육할 권리를!

우리는 최근 두 입양 아동의 학대.사망 소식을 접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대구 사건).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또 다시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다(포천 사건).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 잇따르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두 사건은 정부의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준다. 지금이야말로 구멍 뚫린 입양 관련법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철저히 재구성해야 할 때이다.

#### 1. 미혼모가 내몰린 막다른 선택, 고아원(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sup>1)</sup>은 모든 아동에게 입양 이전에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한다. 은비는 2012년 17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다. 은비 엄마는 홀로 생계를 꾸리고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은비를 직접 키우려 고군분투했다.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에 은비를 맡겼지만 보육료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다. 할 수 없이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아원에 17개월 된 은비를 맡겼다. 어려서 외조모 손에 자랐던 은비 엄마는 시설에서 크는 은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결국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

은비 엄마가 홀로 고군분투할 때 가까운 곳에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면 과연 양육을 포기했을까. 실제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다. 은비 엄마처럼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돌보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sup>2)</sup>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미혼모에게 아이 버리기를 권하는 사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2. 전과10법 양부에게 입양 허가, 구멍 뚫린 법원 판결!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sup>3)</sup>은 입양절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포천 입양 아동의 경우 친모와 입양부

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입양심사를 맡은 법원은 양부가 전과 10범인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법이 이런 입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3년 만에 아동은 양부모에게 끔찍하게 학대·살해당했다. 아동인권에 구멍 뚫린 민법이 입양 아동을 사망케 한 것이다.

### 3. 입양아동은 물건처럼 체험해보고 반환하는 '쇼핑'의 대상이어도 좋은가?

은비 사례에서는 법에도 없는 '입양전제 가정위탁(입양체험)'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허가 결정 이후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은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나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졌다. 심지어 첫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반환'된지 1개월 만에 두 번째 입양가정인 대구 가정으로 보내졌다. '입양체험'은 자칫하면 입양을 '아동쇼핑'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입양체험이 이루어졌다. 입양 체험 기간 동안 누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지 여부도 공백이다.<sup>4)</sup> 이러한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로또'와 같은 것이다.

### 4. 아동인권 최우선의 원칙하에 정부가 개입하는 입양 절차의 부재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과 2014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학대로 사망한 '현수 사건'은 우리에게 입양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입양가족은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정부가 만들어 준 대안 가족이다. 정부는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에 개입하고, 그 결과도 책 임져야 한다. 아동의 복리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양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부터 입양 상담, 아동의 인도까지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게 일임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법상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 단절되어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처럼 정부가 입양을 입양부모와 기관의 선의에만 맡겨두고 제도 자체를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다.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입양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 단체, 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오늘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는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정부의 책무다. 정부도 스스로 그 책임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해양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 2.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지속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 3.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民間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라.**
- 4. 법적근거도 없이 '아동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체험'은 전면 재고하라.**
- 5. 입양부모 교육 내용과 기간을 내실화 하여 입양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 6.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절차를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하라.**

2016. 10. 21.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 김삼화, 금태섭 (공동위원장)

법률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두루

미혼모단체: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대학교수)

아동 및 입양 인권/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뿌리의집, 사)탁틴내일,

한국YMCA전국연맹,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

1) 한국은 2013. 5. 24.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함. 동 협약은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 가능한 가정을 찾고, 국제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함.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에 체결, 1995년 발효되어 세계 90개국이 가입한 상태임. 특히 한국의 주요 입양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6개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했음.

2) 입양아 양육수당은 부모의 재산 관계없이 만 16세까지 월 15만원 지급하고, 만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부여하지만,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정은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8% 이상 52% 이하의 가정에 자녀 나이 만 12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함. 여기에 자녀나이가 만 5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는 5만원을 추가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입양가정에는 아이 심리치료비도 월 20만원 지원 가능함

3)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떠한 사유로건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이의 최우선의 원칙을 선언. 특히 제19조는 모든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제21조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천명.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 협약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의뢰 된 아동의 법정 후견인임. 그 동안 친권자의 친권은 정지됨(입양특례법 제22조 제1항). 법적 근거도 없는 입양체험을 보내는 것이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인의 권한 범위 내 속하는지 의문임.

### 3. 기자회견

####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6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 10시 20분

장소: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민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인권팀장)

**대구 입양아동 학대뇌사 사건 개요** - 김도현 (뿌리의 집 대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경과** - 소라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성명서 및 취지문 낭독** - 이영희(탁틴내일 대표)/김은희(대구미혼모가족협회대표) 및 참가자 일동

**법정모니터링** - 대구지법 법정